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구자연·정유나



연구보고 2020-0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저

자

구자연, 정유나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 유 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0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20년 8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53-1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CCTV 설치·운영이 법제화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배포된 지도 5년이 지났다.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육현장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국 어린이집의 약 99.4%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보육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보육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사례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대로 운영하고 열람하는 문화를 정착하여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5
3. 연구방법 15
4. 용어정의 21

II. 연구의 배경 23

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 25
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27
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55
4. 선행연구 56
5. 해외사례 65

III.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 71

1. A어린이집 사례 73
2. B어린이집 사례 81
3. C어린이집 사례 88
4. D어린이집 사례 94
5. E어린이집 사례 100
6. 소결 106

IV.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개선 요구 109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11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118
3.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121
4.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26
5. 보칙 129
6. 소결 131

V.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133

- 1. 개선방향 135
- 2. 개선방안 141

참고문헌 157

부록 163

- 1. 사례조사 양식 164
 - 2. 전문가 의견조사 양식 171
 - 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안) 191
-



표 목차

〈표 Ⅰ-3- 1〉 사례조사 대상 어린이집 기본 현황	16
〈표 Ⅰ-3- 2〉 사례조사 내용	16
〈표 Ⅰ-3- 3〉 사례조사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17
〈표 Ⅰ-3- 4〉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9
〈표 Ⅰ-3- 5〉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특성	19
〈표 Ⅰ-3- 6〉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실시 일정 및 내용	20
〈표 Ⅰ-4- 1〉 용어정의	21
〈표 Ⅱ-2- 1〉 어린이집의 CCTV 설치 관련 법령	27
〈표 Ⅱ-2-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관련 법령	29
〈표 Ⅱ-2-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관련 법령	30
〈표 Ⅱ-2-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 관련 법령	31
〈표 Ⅱ-2-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내판 설치 관련 법령	32
〈표 Ⅱ-2- 6〉 영상정보처리기기 미설치 동의 및 불이익 금지 관련 법령	33
〈표 Ⅱ-2- 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미설치에 대한 동의절차 및 신고 관련 법령	35
〈표 Ⅱ-2- 8〉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지정 관련 법령	36
〈표 Ⅱ-2- 9〉 내부 관리계획 관련 법령	37
〈표 Ⅱ-2-10〉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법령	38
〈표 Ⅱ-2-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점검 관련 법령	40
〈표 Ⅱ-2-12〉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요청 관련 법령	41
〈표 Ⅱ-2-13〉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관련 법령	43
〈표 Ⅱ-2-14〉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거부 관련 법령	44
〈표 Ⅱ-2-15〉 관계 공무원 및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관련 법령	46
〈표 Ⅱ-2-16〉 영상정보 제공 등 제한 관련 법령	47
〈표 Ⅱ-2-17〉 영상정보 수집 제한 관련 법령	49
〈표 Ⅱ-2-18〉 영상정보 저장 관련 법령	49
〈표 Ⅱ-2-19〉 영상정보 삭제 관련 법령	50
〈표 Ⅱ-2-20〉 열람 등 기록 관리 관련 법령	52
〈표 Ⅱ-2-21〉 사무 위탁 관련 법령	53

〈표 II-2-22〉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령	54
〈표 II-3- 1〉 전국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56
〈표 II-4- 1〉 보육교사의 CCTV 인식 관련 선행연구 결과	62
〈표 II-4- 2〉 보육교사의 CCTV 경험 관련 선행연구 결과	64
〈표 II-5- 1〉 국가별 보육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가능 여부	68
〈표 III-1- 1〉 A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요	74
〈표 III-2- 1〉 B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요	82
〈표 III-3- 1〉 C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요	88
〈표 III-4- 1〉 D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요	94
〈표 III-5- 1〉 E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요	101
〈표 III-6- 1〉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	107
〈표 VI-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사전 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12
〈표 VI-1-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13
〈표 VI-1-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14
〈표 VI-1- 4〉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14
〈표 VI-1- 5〉 CCTV 미설치 동의 및 불이익 금지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	115
〈표 VI-1- 6〉 CCTV 미설치 동의시기 및 동의절차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	116
〈표 VI-1- 7〉 CCTV 미설치 신고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16
〈표 VI-1- 8〉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동의 및 불이익 금지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17
〈표 VI-1- 9〉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동의시기 및 동의절차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18
〈표 VI-2- 1〉 책임자 등 지정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19
〈표 VI-2- 2〉 내부 관리계획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19
〈표 VI-2- 3〉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0
〈표 VI-2- 4〉 설치·운영 점검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1
〈표 VI-3- 1〉 열람 요청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2
〈표 VI-3- 2〉 열람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3
〈표 VI-3- 3〉 열람 거부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4
〈표 VI-3- 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5
〈표 VI-3- 5〉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5

〈표 VI-3- 6〉 영상정보 제공의 제한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6
〈표 VI-4- 1〉 영상정보 수집 제한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7
〈표 VI-4- 2〉 영상정보 저장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7
〈표 VI-4- 3〉 영상정보 삭제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8
〈표 VI-4- 4〉 열람 등 기록 관리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29
〈표 VI-5- 1〉 사무 위탁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30
〈표 VI-5- 2〉 비밀유지의무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130
〈표 V-2- 1〉 사전 의견 수렴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42
〈표 V-2- 2〉 정보주체의 동의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42
〈표 V-2-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	143
〈표 V-2- 4〉 설치구역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44
〈표 V-2- 5〉 안내판 설치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45
〈표 V-2- 6〉 CCTV 설치·운영의 예외 구성 형식 신규비교표	146
〈표 V-2- 7〉 책임관 등 지정 및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수정사항 신구비교표	147
〈표 V-2- 8〉 내부 관리계획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48
〈표 V-2- 9〉 설치·점검 등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49
〈표 V-2-10〉 열람 요청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49
〈표 V-2-11〉 열람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50
〈표 V-2-12〉 열람 거부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50
〈표 V-2-13〉 관계 공무원 및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관련 수정사항 신구비교표	151
〈표 V-2-14〉 영상정보 수집 제한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52
〈표 V-2-15〉 영상정보 저장과 삭제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52
〈표 V-2-16〉 열람 등 기록 관리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53
〈표 V-2-17〉 사무 위탁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54
〈표 V-2-18〉 비밀유지의무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155



그림 목차

[그림 I-3-1] 단계별 연구절차	20
[그림 II-1-1] 도입 배경	26
[그림 V-1-1] 개선방향	136
[그림 V-1-2]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 예시	140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은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이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
 -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 배포된 지 5년이 지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법제화 이후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논란과 사안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사례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할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안)은 현행 법령 규정을 토대로 함.

나. 연구내용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도입 배경과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정리
-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를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쟁점과 이해관계자의 열람에 관한 입장 및 개선 요구 검토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내용 점검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제안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보도자료 및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검토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파악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사례조사

-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관련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운영방식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는 5개 기관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기관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2인, 학부모 2인이 심층면담에 참여함.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열람에 관한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함.

□ 전문가 의견조사

-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22인을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2015년에 제작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의 영역별 개선사항을 파악함.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CCTV 설치·운영 예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열람 및 제공,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보칙 영역으로 구성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연구의 방향 정립과 개선안에 포함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함.
- 사례조사/전문가 의견조사지 검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과 점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라. 용어정의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함.

-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정보, 개인영상 정보, 정보주체,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에 대해 정의함.

2. 연구의 배경

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

- 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
- 2015년 1월 12일,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로 아동학대 장면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함.
- 2015년 1월 13일, 언론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함.
- 201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 처분 실시 예정」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함.
- 2015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교직원 영구 퇴출 등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함.
- 2015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실행방안이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함.
-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됨.
- 2015년 5월 18일, 개정 「영유아보육법」을 공포함.
- 2015년 6월 1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2015년 9월 19일,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작에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의 관련 법령을 검토함.

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 2018년도와 2020년도 전국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을 파악함.

라. 선행연구

- 선행연구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적 고찰,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실태 및 요구,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인식, 어린이집 CCTV 관련 경험으로 구분하여 주제별 내용을 살펴봄.

마. 해외사례

- 해외에서의 보육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상황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쟁점을 고찰함.
 - 미국, 영국, 일본은 보육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가능함.
 - 독일, 핀란드, 프랑스는 보육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불가함.

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

가. A어린이집

-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실시간 송출하다 현재는 송출하지 않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 시 보육: 혼란과 불안
 - CCTV 운영 시 보육: 안전사고 관련 영상정보 열람은 신속하게 대응
 - 공통된 합의가 없는 아동학대 기준
- 개선 요구
 - 부모교육 필요
 - 학부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체계 필요

나. B어린이집

- 휴일보육을 이용한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가 의심된다면서 열람 요청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CCTV 영상화면에 대한 의구심
 - 학부모와의 소통이 중요
 - 개인의 사생활 노출과 교사 인권의 문제는 있으나 CCTV는 필요
- 개선 요구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자문기구 필요
 - 열람 후 사후조치
 -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위한 열람 관련 영상교육자료
 -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다. C어린이집

- 두 번의 아동학대 신고 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보육교직원의 행동 위축과 자기 규제
 - 신뢰의 문제
- 개선 요구
 - 자문/중재기구 필요
 - 열람 후 사후조치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라. D어린이집

- 학부모가 자녀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1년 분량의 영상정보 열람 요청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보육교직원의 자기 규제와 자기 보호
 - CCTV 존재 자체로 안심
 - 불편함과 조심스러움

- 소통하기와 유대관계 형성

□ 개선 요구

- 자문기구 필요
- 부모교육 필요

마. E어린이집

□ 모든 보육실에 일방경(one-way mirror) 창문이 있는 어린이집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확실한 안내 및 소통의 중요성
- CCTV는 보호 장치

□ 개선 요구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간결한 지침 안내서 필요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보육교사를 위한 방문상담 서비스

4.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개선 요구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쟁점이 된 사항은 설치구역과 CCTV 설치·운영 예외임.

- 설치구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현재의 지침 규정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출입로, 계단,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한 지역도 필수 설치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CCTV 설치·운영 예외에서는 CCTV 미설치·미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집단은 운영자의 결정 권한도 존중받아야 하므로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아닌 과반의 동의가 공정한 지침이라고 제안한 반면 학부모 집단에서는 지역 내 어린이집의 공급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함.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집단은 현재의 지침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사생활 침해가 심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자체를 반대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은 설치·운영 점검임.
-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이란 표현의 모호성을 지적함.

다.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열람 요청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열람 거부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사소한 일로 열람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반면 학부모 집단은 현재 거부 사유는 어린이집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열람 거부 사유를 명백한 항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라.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영상정보 저장임.
- 어린이집 원장 집단은 60일 녹화 용량의 부담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장 기간이 30일 정도로 축소되길 원한 반면 학부모 집단은 저장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마. 보칙

-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보육교직원 집단에서도 열람 요청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힘.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가. 개선방향

비전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육환경
목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대로 운영하고 열람하는 문화 정착
개선방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투명하고 건강한 의사소통 증진 - 영상자료를 통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교육 강화 - 설치 시 사각지대 최소화
	② 영상정보의 열람 및 관리 - 자문기구 설치 - 열람 후 사후조치 마련 -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민감도 제고

나. 개선방안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사전 의견 수렴
 - 학부모 총회(재원아동 부모 90% 이상 참석) 개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을 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
- 정보주체의 동의
 - 개정(안)에 추가된 규정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 관련 법령 추가 명시 및 사각지대 최소화 강조

- 참고사항 추가
- 설치구역
 - 감시 범위란 단어를 촬영 범위로 수정
- 안내판 설치
 -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문구 삭제
 - 위탁을 할 경우 안내판에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추가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의 예외
 -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 책임자 등 지정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항목 간 연계성을 위해 구성 변경
 - 법령 기재 오류 수정
 - 내부 관리계획
 - 내부 관리계획을 학부모와 공유할 방법 추가
 - 설치·운영 점검 등
 -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수정
 -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이상 상황과 조치계획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처리담당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문서로 보관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 열람 요청
 - 10일에 대한 기준 명시
 - 열람
 -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모자이크(마스킹) 처리 내용 추가
 -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내용 추가

- 열람 거부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을 법령을 토대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수정

- 관계 공무원 및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 개정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관련 내용 추가

□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 영상정보 수집 제한

- 관련 내용 구체화 및 과태료 부분 추가

- 영상정보 저장과 삭제

- 야간보육이나 휴일보육 필수녹화로 명시
- 추가 보존 사항 기술

- 열람 등 기록 관리

- 영상정보 사본 제공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관련 경우로 제한

□ 보칙

- 사무 위탁

- 위탁 내용 문서화

- 비밀유지의무

-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작성

□ 서식 개선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용어정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은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2015년 5월 18일 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다만 동법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를 CCTV 설치·운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으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및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는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고 이러한 분위기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이 나왔으나 입법화에 실패하다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1) 본문에서 법령 표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9). 국정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p. 162> '법령인용'을 참고하였음.

이다(연합뉴스, 2015. 04. 30.). 이후 같은 해 9월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이 배포되었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이 제작되어 배포된 지 5년이 지났다. 보육현장의 운영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제화 이후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논란과 사안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논란은 법제화가 되기 이전부터 아동학대 예방 효과성과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펼쳐졌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영유아의 인권과 보육교사의 교육권 및 부모의 알 권리 간의 충돌도 보육현장에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다(김종훈, 2017: 53). 이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 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99.4%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으며(보건복지부,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에서 학부모의 90.9%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이정원 외, 2018: 395). 이러한 결과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제는 논란을 넘어 제대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단계임을 알리는 지표이기도 하다. 즉,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현장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2015년에 제작된 기존 가이드라인의 개선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사례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어린

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안)은 현행 법령 규정을 토대로 한다.

2. 연구내용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를 파악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쟁점과 이해관계자의 열람에 관한 입장 및 개선 요구를 검토한다.

셋째,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관리,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내용을 영역별로 점검한다.

넷째,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영상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위해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법적·제도적 근거 자료 및 선행연구를 탐색하였다.

나. 사례조사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열람에 관한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

시하였다. 사례조사 대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관련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운영방식에서 참고할 사안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다. 사례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기본 현황은 <표 I-3-1>과 같다.

<표 I-3-1> 사례조사 대상 어린이집 기본 현황

구분	설립유형	정원(현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종류	설치시기	설치카메라 수
A어린이집	직장	300(249)	네트워크 카메라를 2018년부터 CCTV 기능으로 사용	2015	53
B어린이집	국공립	79(6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2008	10
C어린이집	국공립	69(48)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2005	15
D어린이집	국공립	44(4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2015	7
E어린이집	민간	77(66)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2001	11

사례조사에서는 대상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를 면담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열람에 관한 인식 및 경험을 파악하였다. 사례조사 내용은 <표 I-3-2>와 같고, 사례조사 심층면담 참여자의 특성은 <표 I-3-3>과 같다. 사례조사 양식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I-3-2> 사례조사 내용

구분	대상별 조사 내용		조사방법
기관 개요 및 응답자 특성	원장	• 기관 유형, 규모, 소재지, 교직원 구성 • 원장 경력, 보육 총 경력	면담
	교사	• 담당 반, 반 구성 특성, 보조교사 여부, 운영시간 • 성별, 경력,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경험	
	학부모	• 기관 유형, 기관 이용 시간, 기관을 다니기 시작한 시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경험 • 자녀 성별, 소속 반, 응답자 성별, 취업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원장	• 설치: 설치시기, 설치이유, 정보주체 동의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 화질 등급, 설치 운영책임관 지정, 설치구역, 안내판 관련 • 운영 및 관리: 내부 관리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저장장치 보관장소, 보관장소의 출입제한 여부, 점검 시기, 감시 및 관리 시스템 • 열람 및 제공: 영상정보 열람 장소, 열람 절차, 열람 요청 시 참석자,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사용 여부 •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영상정보 저장기간, 삭제주기 및 방법, 관리대상 작성 및 보관 방식 • 사무의 위탁 여부, 위탁 범위,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여부	면담, 자료수집

구분	대상별 조사 내용		조사방법
운영 및 열람 경험	원장	• 설치, 운영, 관리에서의 어려움, 영상정보 열람 요청 빈도, 열람 요청 사유, 실제 열람 건수, 열람 제외 시 열람 요청이 거부되거나 열람을 하지 않게 된 이유,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과 관련된 어려움(분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순기능과 역기능	면담
	교사	• 내부 계획 인지 여부 및 안내 방식, 영상정보 열람 절차 인지 여부, 열람 요청 빈도, 열람 요청 사유, 실제 열람 건수, 열람 제외 시 열람 요청이 거부되거나 열람을 하지 않게 된 이유, 학부모의 열람 요청 관련 경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순기능과 역기능	
	학부모	• 설치·운영 관련 동의서 작성 시기 및 방식, 설치 장소 인지 여부, 내부 관리계획 인지 여부, 열람 절차 인지 여부, 열람 요청 관련 경험, 이용기관의 열람 관련 사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순기능과 역기능	
가이드라인 개선사항	원장/교사	•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개선사항, 관련 정책에서 중시해야 할 사항	면담
	학부모	•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 포함이 필요한 내용, 관련 정책 방향에서 중시해야 할 사항	

〈표 I-3-3〉 사례조사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사례	참여자	성별	특성
A어린이집	원장 1	여성	• 원장 경력 20년, 보육 총 경력 21년
	교사 1	여성	• 교사 경력 4년(A어린이집이 첫 근무지), 만1세반 담당 • 실시간 영상정보 송출 시 보육 • 학부모의 민원/열람 요청 경험 있음
	교사 2	여성	• 교사 경력 12년, 2016년부터 시간제교사로 근무 • 실시간 영상정보 송출 시 보육 • 학부모의 민원/열람 요청 경험 있음
	학부모 1	여성	• 자녀 만4세반 재원, 첫째(초등학생)도 A어린이집을 다녔음 • 취업, 열람 요청 경험 있음(안전사고)
	학부모 2	여성	• 자녀 만4세반 재원, 첫째(초등학생)도 A어린이집을 다녔음 • 취업, 어린이집 운영위원, 열람 요청 경험 있음(안전사고)
B어린이집	원장 2	여성	• 원장 경력 15년, 보육 총 경력 20년
	교사 3	여성	• 교사 경력 10년, 현재 만2세반 담당 • 학부모의 열람 요청 경험 없음
	교사 4	여성	• 교사 경력 10년, 현재 만1세반 담당 • 학부모의 열람 요청 경험 있음(정서적 학대 의심)
	학부모 3	여성	• 자녀 만2세반 재원, 첫째(현재 유치원 재원)도 영아반부터 B어린이집을 다녔음 • 취업, 어린이집 운영위원, 열람 요청 경험 없음
	학부모 4	여성	• 자녀 만5세반 재원, 첫째(초등학생)도 B어린이집을 다녔음 • 취업, 어린이집 운영위원, 열람 요청 경험 없음

사례	참여자	성별	특성
C어린이집	원장 3	여성	• 원장 경력 10년, 보육 총 경력 25년
	교사 5	여성	• 교사 경력 15년, 현재 만1세반 담당 • 학부모의 열람 요청 경험 있음(안전사고)
	교사 6	여성	• 교사 경력 14년, 현재 만2세반 담당 • 학부모의 열람 요청 경험 있음(안전사고, 같은 반 동료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함)
	학부모 5	여성	• 자녀 만4세반 재원 • 초등교사, 어린이집 운영위원, 열람 요청 경험 없음
	학부모 6	여성	• 자녀 만2세반, 만4세반 재원 • 취업, 어린이집 운영위원, 열람 요청 경험 없음
D어린이집	원장 4	여성	• 원장 경력 4년, 보육 총 경력 9년
	교사 7	여성	• 교사 경력 9년, 만2세반 담당 • 본인이 열람 요청을 받은 적은 없으나 동료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열람에 참석
	교사 8	여성	• 교사 경력 7년, 만2세반 담당 • 본인이 열람 요청을 받은 적은 없으나 동료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열람에 참석
	학부모 7	여성	• 자녀 만1세반, 만2세반 재원 • 프리랜서, 어린이집 운영위원, 열람 요청 경험 없음
	학부모 8	여성	• 자녀 만3세반 재원 • 자영업, 2019년 어린이집 운영위원, 열람 요청 경험 없음
E어린이집	원장 5	여성	• 원장 경력 15년, 보육 총 경력 17년
	교사 9	여성	• 교사 경력 11년, 만2세반 담당 • 학부모의 열람 요청 경험 있음(타원에서 원장이었을 때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당함)
	교사 10	여성	• 교사 경력 8년, 만5세반 담당 • 학부모의 열람 요청 경험 있음(안전사고)
	학부모 9	여성	• 자녀 만3세반 재원, 첫째(고등학생)와 둘째(중학생)도 E어린이집을 다녔음 • 취업, 어린이집 운영위원, 열람 요청 경험 없음
	학부모 10	남성	• 자녀 만4세반 재원, 첫째(초등학생)와 둘째(초등학생)도 E어린이집을 다녔음 • 취업, 어린이집 운영위원, 열람 요청 경험 없음

다. 전문가 의견조사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 내용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2명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은 <표 I-3-4>와 같고, 전문

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I-3-5>와 같다.

<표 I-3-4>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일반적 특성	•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소속, 보육 관련 경험 유무 및 경력 • (현장 전문가) 기관 유형, 경력,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경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사전 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설치구역, 안내판의 설치
CCTV 설치·운영 예외	• 동의 및 불이익 금지, 동의 시기, 동의절차, 신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 동의 및 불이익 금지, 동의 시기, 동의절차, 보고 및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 책임자 등의 지정, 내부 관리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지능형 감지시스템, 설치·운영 점검 등
열람 및 제공	• 열람의 요청, 열람, 열람의 거부,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안전업무 수행기관의 열람, 영상정보의 제공 등 제한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 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의 저장, 영상정보의 삭제, 열람 등 기록의 관리
보칙	• 사무의 위탁, 비밀유지의무

<표 I-3-5>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특성

구분	대상자 수	특성
지자체 공무원	3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담당자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5	•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자
어린이집 원장	7	• 국공립(2기관), 직장(1기관), 민간(2기관), 가정(2기관) 어린이집 원장 •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 포함
보육교사	4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담당자 또는 학부모로부터 열람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학부모	3	• 어린이집 운영위원 또는 열람 경험이 있는 학부모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방향 정립과 개선(안)에 포함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지를 검토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과 점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I-3-6〉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실시 일정 및 내용

구분	개최일자	안건	참석자
자문회의	6. 5.	사례조사 협의 및 전문가 의견조사지 검토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원장 3인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7. 2.	연구 방향 정립 및 진행 관련 협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2인, 한국보육진흥원 2인
자문회의	7. 2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논의	한국보육진흥원 2인
자문회의	7. 29.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및 점검 관련 논의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1인
자문회의	8. 13.	가이드라인 개선(안) 검토 및 논의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어린이집원장 5인

마.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계별 추진내용 및 방법은 [그림 I-3-1]과 같다.

[그림 I-3-1] 단계별 연구절차

단계	내용	방법
착수/연구추진/ 연구내용 구체화 (6월~7월초)	- 연구추진 계획 수립 - 연구내용 구성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고찰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정책방향 및 현황 탐색	- 연구진 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 문헌연구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및 결과 분석 (6월~7월)	- 열람 관련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운영방식에서 참고할 사안이 있는 어린이집 섭외(5기관) - 기관별 원장, 보육교사(2인), 학부모(2인) 심층 면담 진행 - 운영 및 열람 관련 개선 요구 파악 -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총 22인 대상 의견조사 실시 - 기존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개선점 파악	- 사례조사(어린이집 방문) - 전문가 의견조사
↓		
개선방안 도출 (8월)	- 개선방향 설정 - 개선방안 제안 - 개선(안) 도출	- 전문가 자문회의 - 종합분석

4.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 정보주체,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에 대한 정의를 기술했으며 그 내용은 <표 I-4-1>과 같다.

<표 I-4-1> 용어정의

용어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영상정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
개인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

자료: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pp. 2-3.

II

연구의 배경

- 0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
- 0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 0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 04 선행연구
- 05 해외사례

II.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의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연구와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국내·외 쟁점을 파악하였다.

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에도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안심보육 서비스를 표방하며 보육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IPTV로 중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권건보, 2011: 80-81).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사생활 침해나 효용성 관련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연합뉴스, 2015. 04. 30.).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은 CCTV 설치 의무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명분을 제공하였다. 대중의 공분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자료를 1월 14일에 배포하였으며, 1월 27일에 주요 내용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그림 II-1-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고 한 차례 부결 끝에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연합뉴스, 2015. 04. 30.).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2015년 12월 18일까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15. 6. 18.). 이후 같은 해 9월 19일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보건복지부, 2015)이 배포되었다.

[그림 II-1-1] 도입 배경

발생일자	주요 내용
2015년 1월 8일	• 인천 연구구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
↓	
2015년 1월 12일	•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로 아동학대 장면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
↓	
2015년 1월 13일	•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
↓	
2015년 1월 14일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보도참고자료 배포: 부모모니터링단 활성화와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명시
↓	
2015년 1월 16일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교직원 영구 퇴출 등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발표
↓	
2015년 1월 27일	• (보건복지부) 실행방안이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주요 내용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포함
↓	
2015년 4월 30일	• (국회 본회의)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2015년 5월 18일	• 개정 「영유아보육법」 공포
↓	
2015년 6월 18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은 2015년 12월 18일까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함
↓	
2015년 9월 19일	•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5. 1. 14.).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 16.). 「앞으로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 27.).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5. 4. 30.).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5. 6. 1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p. 1.

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은 「영유아보육법」,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제작되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이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과 관련된 법령의 조문을 살펴보았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의4 제2항은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동법 제15조의4 제3항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CCTV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표 II-2-1〉 어린이집의 CCTV 설치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

법령 및 지침	내용
	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3) 법 제1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4)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5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75만원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사전 의견 수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예고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I-2-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관련 법령

법령 및 자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자료: 1)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1의2 CCTV 관리기준을 살펴보면 CCTV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할 수 없으며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장치의 경우에도 영상정보를 고해상도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와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서도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

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표 II-2-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 자료: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3>)에서 2020. 6. 1. 인출.
- 2)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 3)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4) 설치구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는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별도로 구획된 공간인 식당, 별도로 구획된 공간인 강당에 1대씩 설치하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치된 CCTV는 일정한 방향을 지속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주변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표 II-2-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를 제외한다) 및 식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이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자료: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liBgcolor3>)에서 2020. 6. 1. 인출.

2) 아동복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5) 안내판 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CCTV 설치 목적,

CCTV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II-2-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내판 설치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⑦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i)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ii)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iii)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자료: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3>)에서 2020. 6. 1. 인출.
- 2)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나. CCTV 설치·운영의 예외

1) 동의 및 불이익 금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CCTV를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이고, 둘째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와 제7호에서는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거리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영상은 개인정보에 속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거리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동법 제15조와 제22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22조는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II-2-6〉 영상정보처리거기 미설치 동의 및 불이익 금지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법령 및 지침	내용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 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8. 14. 인출.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동의절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CCTV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CCTV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된 CCTV를 관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 II-2-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미설치에 대한 동의절차 및 신고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1) 책임자 등 지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1의2에 따라 CCTV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다만, 지정된 직원(관리자)에게 CCTV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2-8〉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지정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된다. 다만, 지정된 직원(관리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자료: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2) 내부 관리계획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제29조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II-2-9〉 내부 관리계획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5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75만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 및 지침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본다.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안전성 확보 조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제54조 제3항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및 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1의2에 제시된 CCTV 관리기준에서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녹화(저장)된 영상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으로 보관되어야 하고, 허가된 직원에 한정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II-2-10〉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및 지침	내용
	제54조(벌칙)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 오용·남용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녹화(저장)된 영상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으로 보관되어야 하고, 허가된 직원에 한정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4) 설치·운영 점검 등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4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CCTV의 설치 및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9에서는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였다. 조사·점검할 사항에는 ‘CCTV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표 II-2-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점검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라.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1) 열람 요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를 보면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에서도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받은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 II-2-12〉 영상정보처리하기 열람 요청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및 지침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4)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2) 열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는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4항에 의하면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0일이다.

〈표 II-2-13〉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열람 거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는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금지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를 보면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I-2-14〉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거부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법령 및 지침	내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익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4) 관계 공무원 및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2020년 4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했던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와 처리업무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2항을 보면 관계 공무원과 안전업무 수행 기관은 정당한 열람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표 II-2-15〉 관계 공무원 및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및 지침	내용
	부칙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아동복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7. 14. 인출.

5) 영상정보 제공 등 제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2항에서는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II-2-16〉 영상정보 제공 등 제한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령 및 지침	내용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라.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 영상정보 수집 제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 수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설치 목적과 다르게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및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나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으며,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II-2-17〉 영상정보 수집 제한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2) 영상정보 저장

영상정보의 저장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이다.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을 보면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 보관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적 규정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에서도 개인정보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및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I-2-18〉 영상정보 저장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및 지침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3) 영상정보 삭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을 보면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서는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 외에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표 II-2-19〉 영상정보 삭제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법령 및 지침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정정 또는 삭제"로 본다.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자료: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 2)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8. 14. 인출.

4) 열람 등 기록 관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 제1항을 보면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영상정보 열람대장에는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

일의 명칭 및 내용’,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동법 제9조의7 제2항에 따라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표 II-2-20〉 열람 등 기록 관리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마. 보칙

1) 사무 위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화할 내용과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도 위탁 시 문서화할 내용으로 ‘위탁 사무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영상정보의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II-2-21〉 사무 위탁 관련 법령

법령 및 자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채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법령 및 지침	내용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자료: 1)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금지행위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동법 제71조 제5호와 제6호에서는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표 II-2-22〉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법령 및 지침	내용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liBgcolor0>)에서 2020년 6월 1일 인출함.

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전국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3-1>과 같다. 2020년도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어린이집 35,238개소 중 CCTV는 33,138개소, 네트워크 카메라는 1,912개소, 미설치는 184개소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전국 어린이집 39,393개소 중 CCTV는 37,301개소, 네트워크 카메라는 1,871개소, 미설치는 221개소였다. 어린이집 개소 수의 감소로 2020년도에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 개소 수가 감소했으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 개소 수는 증가하였다.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2018년도에는 221개소였고, 2020년도에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184개소(2018년 세종시 미설치 동의 기관 0개소)로 조사되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도 6월말 기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도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어린이집 10,743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 5,383개소, 경남 2,578개소, 인천 1,951개소, 부산 1,761개소, 경북 1,747개소, 충남 1,721개소, 대구 1,265개소, 대전 1,198개소, 전북 1,195개소, 전남 1,083개소, 충북 1,080개소, 광주 1,068개소, 강원 997개소, 울산 797개소, 제주 487개소 순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1〉 전국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시도	전체 어린이집		세부 설치현황						미설치 동의	
			계		CCTV		네트워크 카메라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총계	39,393	35,238	39,172	35,054	37,301	33,138	1,871	1,912	221	184
서울	6,033	5,422	5,990	5,383	5,758	5,057	232	326	43	39
부산	1,899	1,772	1,885	1,761	1,818	1,728	67	33	14	11
대구	1,410	1,269	1,404	1,265	1,330	1,208	74	57	6	4
인천	2,153	1,957	2,144	1,951	2,079	1,844	65	107	9	6
광주	1,214	1,073	1,204	1,068	1,195	1,038	9	30	10	5
대전	1,441	1,203	1,435	1,198	1,378	1,195	57	3	6	5
울산	871	798	870	797	855	779	15	18	1	1
세종	325	-	325	-	267	-	58	-	0	-
경기	11,705	10,830	11,607	10,743	11,201	10,274	406	469	98	87
강원	1,107	1,001	1,103	997	1,069	946	34	51	4	4
충북	1,161	1,081	1,160	1,080	1,080	1,006	80	74	1	1
충남	1,911	1,724	1,906	1,721	1,780	1,544	126	177	5	3
전북	1,425	1,198	1,421	1,195	1,350	1,126	71	69	4	3
전남	1,212	1,087	1,208	1,083	1,124	970	84	113	4	4
경북	1,997	1,751	1,993	1,747	1,823	1,562	170	181	4	4
경남	3,017	2,584	3,007	2,578	2,745	2,437	262	141	10	6
제주	512	488	510	487	449	424	61	63	2	1

주: 2020년 자료는 2020년 6월말 기준이며, 세종시는 자료 미제출.
 자료: 1)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내부자료.
 2) 보건복지부(2020a). 2020년도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내부자료.

4. 선행연구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수행되어 보고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적 고찰’,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실태 및 요구’,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인식’, ‘어린이집 CCTV 관련 경험’으로 구분하여 주제별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적 고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법률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헌법적 쟁점을 다루거나 CCTV 운영과 관련된 권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순원(2017: 45)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관련 내용의 헌법적 타당성을 고찰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과 보육교사의 기본권 상충 문제도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은 인정되지만, 피해의 최소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술하였다(정순원, 2017: 64). 특히 정순원(2017: 69)은 CCTV 설치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하는 입법 태도는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관련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내용을 헌법적인 관점에서 재고찰한 김정수(2019)도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가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김정수, 2019: 256). 김정수(2019: 282)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위헌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입법목적인 영유아의 권리와 더불어 헌법상 보장되는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재고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분석한 김태동과 이서영(2017)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아동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반드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태동·이서영, 2017: 156). 이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언적이며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김태동·이서영, 2017: 157). CCTV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권리 충돌에 대한 이익형량 연구에서도 김태동(2017)은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공공복리가 감시대상의 모든 기본권을 침해할 만큼 무제한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태동, 2017: 20). 김태동(2017)은 공공복리의 목적에 맞으면서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CCTV 운영 주관기구를 만들어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보육교직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김태동, 2017: 20).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분석한 이관후와 조희정(2015)은 입법과정에서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의 핵심 사안들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이관후·조희정, 2015: 97). 이관후와 조희정(2015)은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불분명하며,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도 비체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영상정보관련기본법을 제정하여 대규모의 감시체계가 개별법의 개정으로 만들어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이관후·조희정, 2015: 109).

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실태 및 요구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연구 중 김미정과 김구슬(2016)은 경기도에서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164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원장이 전담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78.0%로 나타났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은 74.4%가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미정·김구슬, 2016: 39). 181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55.8%의 교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김구슬, 2016: 58).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조사 시점까지 학부모의 열람 요청이 1건 이상 있었던 어린이집은 20.7%로 나타났으며, 열람 사유로는 안전사고 경위 확인이 5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김미정·김구슬, 2016: 41).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효과와 관련해서 원장과 보육교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할 수 있거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교사를 보호할 수 있기에 도움이 되지만 부모와 교사와의 신뢰 회복이나 수업모니터링을 통한 교사의 자기계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김미정·김구슬, 2016: 46, 65). 반면, 28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에 응답자의 92.2%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응답과는 다르게 부모와 교사의 신뢰 회복에도 CCTV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김미정·김구슬, 2016: 83, 85).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개선점으로 원장과 학부모는 ‘어린이집 부모 대상 기본적인 교육 실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김미정·김구슬, 2016: 50, 89), 보육교사는 ‘교사의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김미정·김구

슬, 2016: 69).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영상정보로 학대여부를 판정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공적 중재위원회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김미정·김구슬, 2016: 52, 74, 91), 수치상으로 보면 원장과 보육교사보다 학부모가 필요성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김구슬, 2016: 90).

어린이집 교사 107명을 대상으로 한 강은진·이정림·조혜주(2015)의 연구에서는 CCTV 운영 시 교사들이 바라는 점으로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록물 관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강은진 외, 2015: 128). CCTV를 관리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CCTV 열람 후 학부모의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규제 지침 마련’, ‘학부모의 CCTV 열람 신청과 사후처리에 대한 규칙 포함’, ‘CCTV 설치 시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전원 동의 필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육교사들이 학부모 관련 제재 지침이 마련되길 원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강은진 외, 2015: 128).

어린이집 원장 3,4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를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대략 알고 있다’는 응답도 32.1%로 나타나 응답자의 99.0%가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유해미 외, 2018: 154). CCTV 열람 신청 비율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24.1%), 민간어린이집(23.1%) 순이었다(유해미 외, 2018: 155). 열람 요청 사유로는 ‘안전사고 의심’이 53.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유해미 외, 2018: 156).

학부모 1,753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에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90.9%로 나타났으며,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아동과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59.9%였다(이정원 외, 2018: 395). CCTV 열람 경험을 조사한 결과 94.9%가 열람 경험이 없었으며, 열람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서는 안전사고 의심으로 열람을 신청한 비율이 46.9%로 가장 높았다(이정원 외, 2018: 396-397).

다.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인식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인식은 보육교사의 CCTV 인식에 관한 연구와 대상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모두 설문 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서보순, 구은미와 강인자(2016)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CCTV에 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서보순 외, 2016: 85). 보육교사들은 CCTV가 교사의 인권과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유아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사나 기관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보순 외, 2016: 85).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해서는 근무여건과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CCTV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서보순 외, 2016: 87).

유경숙(2018)의 연구에서는 CCTV에 대해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권리보장을 제외한 심리적 반응, 교사권리 보장, 기관 운영 개선에 대한 기대 영역 모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유경숙, 2018: 139). 이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CCTV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인권감수성 및 아동인권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숙, 2018: 140).

보육교사의 CCTV에 대한 인식이 영유아권리존중 관련 보육과 교사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김경인과 구은미(2019)의 연구에서도 CCTV에 대한 심리적 반응 및 CCTV의 영유아권리보장 관련 인식이 긍정적인 교사일수록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인·구은미, 2019: 247). 또한 교사의 CCTV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교사의 자존감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경인·구은미, 2019: 246).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CCTV의 필요성 인식 및 역할수행, 어린이집 조직건강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권정윤과 조혜영(2017)의 연구를 보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CCTV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CCTV 설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어린이집 조직의 건강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권정윤·조혜영, 2017: 157-158). 보육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CCTV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김성원과 이지영(2020)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CCTV가 교사의 행동을 제약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인식하였다(김성원·이지영, 2020: 815).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본 이연승과 이유진(2018)의 연구를 보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원장과 교사보다 어머니의 경우 의무화가 적절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연승·이유진, 2018: 223). CCTV 설치 의무화가 적절한 이유로 원장, 교사, 어머니 모두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과 문제 상황을 식별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부적절한 이유로는 연구 대상자 모두에서 교사와 영유아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이연승·이유진, 2018: 223).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에서 원장과 교사는 ‘실내·외 놀이터에 설치되어야 한다’가 높았던 반면, 어머니는 ‘보육실에 설치되어야 한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이연승·이유진, 2018: 224).

김영희와 김두정(2018: 311)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원장, 교사, 학부모, 일반인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CCTV가 아동 간의 다툼과 폭력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은 교사보다 학부모와 일반인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CCTV 자료가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은 교사보다 원장, 학부모, 일반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김영희·김두정, 2018: 314). CCTV 영상정보가 인권사건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교사보다 학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CCTV가 학대 의도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은 교사보다 원장, 학부모, 일반인에게서 높았다(김영희·김두정, 2018: 314). CCTV 설치의 남발과 공개가 부모들의 교사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문항과 관련하여 원장과 학부모보다 교사들의 동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CCTV로 올바른 교육적인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보다 원장, 교사, 일반인의 동의가 높았다(김영희·김두정, 2018: 314).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했던 김진숙, 김미영과 이봉선(2016)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CCTV 활용 관련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에 대해 보육교사는 ‘매우 심하게 침해한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부모는 ‘약간 심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김진숙 외, 2016: 166). 어린이집 CCTV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는 아동 훈육 시 교사 행동이 제약되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부모는 교사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김진숙 외, 2016: 167).

〈표 II-4-1〉 보육교사의 CCTV 인식 관련 선행연구 결과

	보육교사의 CCTV 인식
긍정적 예측요인 및 영향	•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교사는 CCTV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의 조직 건강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였음(권정윤·조혜영, 2017: 159) • CCTV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CCTV의 영유아권리보장 관련 인식이 긍정적인 교사일수록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았음(김경인·구은미, 2019: 247) • CCTV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아동인권인식이 높았음(유경숙, 2018: 140) • 근무여건과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CCTV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서보순 외, 2016: 87)
부정적 예측요인 및 영향	• 교사의 CCT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자존감 수준을 낮춤(김경인·구은미, 2019: 246) •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CCTV가 교사의 행동을 제약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인식함(김성원·이지영, 2020: 815)

라. 어린이집 CCTV 관련 경험

어린이집 CCTV 관련 경험에 관한 연구는 주로 보육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질적 연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보육교사들의 CCTV 경험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수행된 임수정, 이일랑과 이대균(2013: 433)의 연구에서는 CCTV를 경험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CCTV로 인한 어려움과 도움을 살펴보았다. CCTV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은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을 모두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임수정 외, 2013: 450). 교사들은 CCTV 설치로 개인 공간이 침해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감시받는 듯한 느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CCTV가 보육실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해 학부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임수정 외, 2013: 450).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질적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CCTV에 대해 양가감정을 지니고 있었다(윤주연·장경은·박지현, 2020: 4, 8). 보육교사들은 CCTV가 아동학대 의심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보육교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교사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교사보다 CCTV를 더 신뢰하는 부모들의 반응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윤주연 외, 2020: 9-11). 아동학대 의심받았던 교사들은 부모의 오해가 해소된 이후 부모, 영유아, 보육교직원들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공통되게 경험하였다(윤주연 외, 2020: 11). 교사들은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고, 영유아에게도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려 했다(윤주연 외, 2020: 11-14). 일부 교사들은 사건 이후 원장의 면박이나 원감의 감시를 경험하면서 일종의 죄책감과 고립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나타났다(윤주연 외, 2020: 15). 특히 학대 의심 사건 이후로 교사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경험했으며, 이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윤주연 외, 2020: 15).

CCTV 설치 관련 교사의 경험에 관한 차선희와 이진숙(2016: 310)의 연구에서 영유아교사들은 CCTV에 대해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을 더 많이 언급하였다. CCTV라는 단어와 관련된 이미지로 ‘지켜보는 학부모’, ‘사생활 침해’, ‘행동 제재’, ‘감시’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으며, 긍정적 이미지로는 ‘한결같음’, ‘정직’, ‘아동관찰’의 이미지가 있었다(차선희·이진숙, 2016: 310). 연구 참여자들은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훈육이나 스킴십을 줄이고 있으며, 학부모가 오해하지 않도록 영유아에 대해 소극적 행동을 취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고 밝혔다(차선희·이진숙, 2016: 311-313).

이서연, 홍순옥과 정은주(2017: 41)는 어린이집 교사 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교사들이 교사권리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CCTV로 인해 행동적 제약을 경험했으며 교사의 사기저하 및 수업 스트레스 증가 등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이서연 외, 2017: 49). 교사들은 CCTV를 열람하게 될 경우 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기에 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열람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이서연 외, 2017: 51-5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후 보육교사들은 문제행동이나 생활지도를 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정운·송나리, 2018: 241).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것을 피하고자 유아에 대한 신체 접촉을 최소화했으며 언어로만 유아의 행동을 통제한다고 언급하였다(권정운·송나리, 2018: 241-242). 이영아와 이대균(2017)의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교사의 어려움으로 CCTV에 대한 부담감, 소심해진 행동, 줄어든 영유아에 대한 애정표현, 어려워진 훈육, 예비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과 사라진 교사의 인권, 제3의 감시의 눈인 원장님 등을 언급하였다(이영아·이대균, 2017: 203-205). 교사의 바람과 관련해서 교사들은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요구했으며, 교사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원했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와 함께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영아·이대균, 2017: 205-207).

〈표 II-4-2〉 보육교사의 CCTV 경험 관련 선행연구 결과

	보육교사의 CCTV 관련 경험
긍정적 측면	• 아동학대 의심자로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교사 보호(윤주연 외, 2020: 9) • 유아들 간의 다툼과 교사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활용 가능(임수정 외, 2013: 447; 차선희·이진숙, 2016: 315) • 자기계발/자신의 행동개선에 도움(임수정 외, 2013: 445; 차선희·이진숙, 2016: 315)
부정적 측면	• 문제행동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어려워진 훈육(권정운·송나리, 2018: 241; 이영아·이대균, 2017: 193; 차선희·이진숙, 2016: 313) •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권정운·송나리, 2018: 245; 이영아·이대균, 2017: 189) • 스킨십 회피와 의도적인 거리두기(윤주연 외, 2020: 13; 이서연 외, 2017: 50; 이영아·이대균, 2017: 192; 차선희·이진숙, 2016: 312) • 교사의 사기저하, 수업 스트레스 증가 등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저해(이서연 외, 2017: 49; 이영아·이대균, 2017: 189; 임수정 외, 2013: 442) • 보육교사에 대한 편향된 시선/예비범죄자 시선(이서연 외, 2017: 50; 이영아·이대균, 2017: 194) • 무분별한 CCTV 열람으로 교사의 권리, 유아와 교사의 사생활 침해, 초상권 등을 해칠 우려 존재(이서연 외, 2017: 53)

5. 해외사례²⁾

본 절에서는 해외에서의 보육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상황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본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해외교육동향에 게재된 국가별 해외 보육·교육시설 CCTV 설치 현황 관련 기획기사 중 보육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요약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의 내용에는 본 연구진이 최근 자료를 추가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은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진 않았으나 기관의 재량에 따라 보육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보육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정이 존재하진 않지만, 주별로 보육기관 내 CCTV 설치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보육기관의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Farley, 2018). 첫째, CCTV 운영의 목적은 부모가 보육 및 교육기관에 있는 자녀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함이며, 교사가 기관 내 다른 곳에서 아동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Farley, 2018). 둘째, 보육기관이 CCTV를 설치할 경우, 관리자는 기관 내 모든 직원과 부모에게 CCTV 설치 목적과 CCTV 카메라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Farley, 2018). 셋째, CCTV는 복도와 보육실을 포함한 공동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며, 화장실이나 교사가 느끼기에 사생활을 침해받는다고 생각되는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Farley, 2018). 미국의 사립 보육기관은 원장과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CCTV 설치가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이후 보육기관의 CCTV 설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보육기관 내 CCTV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CCTV가 보육실 내 안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비교했을 때 기관의 안전한 풍토 조성에 근본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영국은 보육실에서의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많은 보육기관에서 CCTV 또는 Webcam을 설치하고 있다. Webcam의 경우에는

2)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의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2015. 02. 25. 발행)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내용에는 본 연구진이 Farley(2018), Ofsted(2019)의 자료를 추가하였음.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는 <http://edpolicy.kedi.re.kr/frt/boardList.do?strCurMenuId=54>에서 2020. 6. 9. 인출.

부모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녀가 보육기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보육기관들은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홍보하고자 홈페이지에 CCTV 완비를 명시하기도 한다. 보육기관 내 CCTV 설치 및 운영은 보육환경의 안전과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CCTV 또는 Webcam을 설치한 기관들이 많아졌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이슈도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교육기준청(Ofsted: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용 목적과 장소, 보관 및 폐기 시 지켜야 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감독하는 독립기관인 정보보호감독청(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 CCTV 운영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한다(Ofsted, 2019).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보육기관은 ICO에 그들의 설치 목적을 보고하고 CCTV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록관리자의 이름을 제공해야 하며, CCTV를 설치·운영하는 보육기관은 CCTV 운영의 목적과 사용용도, CCTV의 위치, 관리 방법, 기록 저장방법 및 기간 등 각 기관에서 정한 CCTV 관련 규칙을 공개해야 한다(Ofsted, 2019).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CCTV 기록의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교사의 소극적 태도 조장 및 스트레스 증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일본 역시 보육실 내 CCTV 설치가 가능한 국가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게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육기관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현재는 외부인 침입 방지의 목적으로 보육기관의 입구나 현관 등에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최근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 자녀의 활동을 볼 수 있는 '라이브 카메라'를 설치하는 기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라이브 카메라'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자녀가 활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있지만, 라이브 카메라로 인해 교사와 영유아가 느끼게 되는 불편함과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견해도 있다. 라이브 카메라를 통해 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를 쌓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보육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불가한 국가에는 독일, 핀란드, 프랑

스가 있다. 독일은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된 경우가 없을뿐더러 설치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독일에서는 훈육이나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신고와 법적 고소도 이미 사회에 정착되어 있어서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나 동료 교사가 즉시 신고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므로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는 독일 내 개인정보를 위한 정보보호 정책의 영향이다. 독일 헌법에서 기본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보육기관 내 CCTV 설치의 거의 불가능하다. 일부 보육기관에서 외부로부터의 도난과 기물파손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영유아의 발달상황이나 학대 관찰을 위한 목적으로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도난방지 등의 이유로 보육기관의 입구에 CCTV 설치를 하더라도 교직원, 부모, 영유아 등 모든 관계자가 이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핀란드에서도 보육실 내 CCTV가 설치된 보육기관을 찾기는 어렵다. 이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요시하는 핀란드의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CCTV를 설치한 보육기관의 경우, CCTV를 기물파손 및 도난방지 등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있어야 하며, CCTV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는 CCTV 영상 보존 기간, 관리담당자, 목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CCTV 모니터링은 경찰 또는 기관의 관리담당자 등 제한된 사람만 가능하며, 실시간 감시체계가 아닌 사후 조사 용도로만 사용된다. 따라서 핀란드에서는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육기관 내 학대 등은 다른 법적 조치로 강하게 통제하고 교사와 영유아 간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보육실에 CCTV 설치가 불가한 국가이다. 보육기관의 주변 도로나 기관 내 복도, 현관 입구 등에는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교통안전, 외부인 진입 시도 및 기관의 기물파손과 절도 등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영유아나 교사를 감시하는 목적의 CCTV 설치 금지된다. 프랑스 보육기관에서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나 보육기관 내 CCTV가 설치되는 경우 영유아,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CCTV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안내

판에는 CCTV 설치 및 운영 책임자, 목적, 그리고 영상에 찍힌 정보주체의 권리를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CTV 녹화 영상은 일반적으로 최대 한 달 동안 보존된다. 프랑스 보육기관 내 CCTV는 2001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나 영유아와 교사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009년에는 교육부 장관이 보육·교육기관 내 CCTV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CCTV 설치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자유 침해에 대한 제소가 이어지면서 보육실 및 식당과 같은 생활공간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보육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동영상에 찍히는 정보주체에 대한 초상권 문제, 개인정보와 자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초상권 문제와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보육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표 II-5-1〉 국가별 보육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가능 여부

구분	국가	특징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가능	미국	• 각 주 단위로 보육기관 내 CCTV 설치를 자율적으로 규제 • 사립 어린이집(보육기관)은 원장이 학부모들의 동의만 있으면 CCTV 설치 가능	[연방법] •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1974) •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986) • 주(州) 단위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률 존재
	영국	• CCTV와 더불어 보육실에 WebCam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보육실 상황 확인 가능) 설치 증가 • 관찰 및 기록 보관용 기기 설치 시 사용 목적, 장소, 보관, 폐기 등에 대한 기준 준수 강조	• 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2018) • 프라이버시 전자통신 규정(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3)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규정(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Regulations, 2018)
	일본	•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영상 확인이 가능한 라이브 카메라 도입 증가 • 방범용 목적으로 교문, 현관, 통학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불가	독일	• 보육실, 놀이터 등 아동이 계속 머무르는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 훈육이나 교육을 위한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정보보호 정책으로 보육기관의 CCTV 설치 관련 논의는 전무한 상황	•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을 토대로 연방과 주차원에서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중임
	핀란드	• 보육기관 내 CCTV 설치는 보편적이지 않음 • 보육기관의 CCTV 설치는 기술파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	•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구분	국가	특징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 CCTV 모니터링은 경찰이나 학교의 시스템담당자만 가능(사후 조사 용도로만 사용)	
	프랑스	• CCTV는 보육기관 주변 도로, 기관 내 복도, 현관 입구 등에 설치 가능 • 아동이나 교사를 감시하는 목적으로는 설치 금지	•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자료: 1) 미국-① 특징: 이세웅(2015. 2. 25.). 미국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90&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85&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②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usa.do에서 2020. 6. 9. 인출.
- 2) 영국-① 특징: 강호원(2015. 2. 25.). 영국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0056&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87&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②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england.do에서 2020. 6. 9. 인출.
- 3) 일본-① 특징: 김지영(2015. 2. 25.). 일본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0060&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91&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②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japan.do에서 2020. 6. 9. 인출.
- 4) 독일-① 특징: 정수정(2015. 2. 25.). 독일 보육·교육기관의 CCTV 설치 관련 논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0057&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88&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②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germany.do에서 2020. 6. 9. 인출.
- 5) 핀란드-① 특징: 남궁옥(2015. 2. 25.). 핀란드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0059&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90&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②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eu.do에서 2020. 6. 9. 인출.
- 6) 프랑스-① 특징: 최지선(2015. 2. 25.). 프랑스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0058&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89&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②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eu.do에서 2020. 6. 9. 인출.

III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

- 01 A어린이집 사례
- 02 B어린이집 사례
- 03 C어린이집 사례
- 04 D어린이집 사례
- 05 E어린이집 사례
- 06 소결

III.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각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했으며 원장, 교사, 학부모와의 심층면담으로 운영 및 열람 관련 쟁점을 파악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확인하였다.

1. A어린이집 사례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식

A어린이집은 지방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249명의 영유아가 재원 중이며, 원장을 포함하여 총 61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A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쟁점이었던 2015년 초에 개원한 기관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학부모 직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송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A어린이집 원장은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을 위해 매년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2017년부터 영상정보 송출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어 영상정보를 부분적으로 송출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영상정보를 송출하지 않고 있다.

A어린이집에는 총 53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실에 26대, 공동놀이실에 1대, 놀이터에 6대, 식당에 4대, 복도/현관에 5대, 건물 외부에 11대가 설치되어 FULL HD급 화질로 60일 이상 영상정보가 저장된다. 관리책임자는 원장이고, 운영담당자는 원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은 전문위탁 업체를 통해 매월 1회 시행된다.

〈표 III-1-1〉 A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요

구분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종류	• 네트워크 카메라 → 2018년부터 CCTV 기능으로 / (화질) FULL HD급
설치시기 및 이유	• 2015년 개원 시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영상정보 송출 •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을 전원 동의하지 않아 2018년부터 실시간 영상 송출 차단
설치 운영책임관	• 책임관: 원장 • 운영(담당자): 원감
설치구역	• 설치카메라 대수: 53대 • 보육실 26대, 공동놀이실 1대, 놀이터 6대, 식당 4대, 복도/현관 5대, 건물 외부 11대
안내판 기재사항	• 설치목적: 시설물 관리, 도난방지, 화재 예방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 촬영범위: 사업장 내부 및 외부(60일 저장) • 설치장소: 보육실 및 실외놀이터 등 공용공간 (출입구 안내판에는 보육실 및 실외놀이터 등 공용공간으로 기재) • 담당자 및 연락처: 책임자 A어린이집 원장 ○○○ 운영자 A어린이집 원감 ○○○ 위탁업체 연락처 기재
내부 관리계획	• 가정통신문,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
저장장치 관리	• 보관장소: 행정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잠금장치 비밀번호는 원장, 원감, 직장 담당자만 알고 있음
점검시기	• 매월 1회
영상정보 열람 장소	• 원장실
개인정보보호 조치	• 모자이크(마스킹) 프로그램 구매
영상정보 저장기간 및 삭제 주기	• 60일 이상 저장 • 60일 경과 시 자동삭제
사무의 위탁 관련	• 전문기관에 위탁

자료: 1) A어린이집 원장님과 심층면담(2020년 6월 26일 진행)에서 수집한 내용임.

2) 안내판 기재사항은 A어린이집 어머니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외부 공간에서 확인함.

나. 네트워크 카메라 관련 사안

A어린이집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당시 언론에도 보도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불신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한 1년 정도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중략)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굉장히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보육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A어린이집 원장 1)

부모 입장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내기를 원해요. 정말. 끝을 봐도 결과를 내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 교사의 위치가 이렇게까지 바닥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 (중략) ‘그 교사가 정말 내 아이를 어떻게 했을 거야’ 단정을 짓고 시작하면 교사는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쨌든 기각이고 하지만 전체 교사에게도 마이너스고요. (중략) 안전 사고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CCTV를 누가 본다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 교사는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대요. 후유증이에요 이걸. 교사로서는 큰 후유증을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없어서 기각되었어도. (A어린이집 교사 1)

어린이집 전화해서 욕은 욕대로 하고, 전화 받자마자 욕해요. 부모님들이 누군지 불특정 다수들에게 욕을 다 받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욕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왜 결론이 안 났는데 왜 벌써 처벌을 한다는 식으로, 죽으라는 식으로, 그리고 더 심하게는 너희들 조심해라,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리고 맘카페나 이런 인터넷 상에는 이미 우리는 범죄자가 되어있고. (중략) 어떤 결과가 나온 후에 비판해야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런 비판을 하면.. 그 선생님들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A어린이집 교사 2)

네트워크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정보 송출은 학부모의 민원을 증가시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원장과 교사들은 그 당시 시간 단위로 민원에 대응했다고 언급하였다. 기기의 특성상 네트워크 전송 이후 수신자들에 대한 통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개인영상정보가 유포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네트워크 카메라 보고 있다가 아이가 자유선택 활동에 스스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왜 방치하고 있냐, 왜 다른 애만 옆에 앉혔냐, 밥을 떠먹이냐’ 막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엄청 많았어요. (중략) 엄청나게 민원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교사가 99.9%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 한다, 그런 의심 사례가 있다, 보인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민원을 넣으셨죠.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힐링 프로그램 계속 돌리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치유적인 접근하고. 선생님들이 교직을 떠난 사람도 많고. (A어린이집 원장 1)

전화해서 팔 좀 내려주세요, 코를 닦아주세요. 바로 콜인 거예요. 그러면 다 마비예요. 행정실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교실로 연결해서. 민원이 시간별로 있었어요. (A어린이집 교사 2)

캡처를 해서 이모, 고모, 할머니한테 보내고 영상으로 이거를 컴퓨터를 틀어놓고 휴대폰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노출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A어린이집 원장 1)

A어린이집 원장은 이런 방식으로 보육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실별 반대표 어머니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결성하였다. 원장과 학부모회는 매월 의견을 수렴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보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학부모의 일일교사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간 영상정보 송출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증가하여 A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영상정보 송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상정보 송출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기에 이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미동의자가 발생하면서 엄청 민원이 많았어요. ‘왜 안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해는 돼요. 근데 미동의하신 분들은 ‘왜 안 하셨을까’라는 걸 동의하신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필요한 거지, 미동의한 사람 처음에 학부모들이 막 색출하고. (A어린이집 교사 1)

저희 원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보여 달라고 해요. 그거 기본인데 왜 그걸 보여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거를 보여 달라고 해요. 그런 마인드에는 ‘내가 너 색출하고 말 거야’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죠. (A어린이집 교사 2)

송출 동의 관련해서 학부모들끼리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마녀사냥 하듯 미동의한 사람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불필요한 다툼이 사라졌으면 해요. (A어린이집 학부모 1)

미동의한 사람을 색출해요. 부모들이. (중략) 그 반 안에서 색출 작업이 거의 뭐 범인 잡기예요. 서로가 상처받고 서로 부모끼리 상처 주고 선생님을 의심하고. (A어린이집 학부모 2)

A어린이집은 영상을 송출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의 민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정착되면서 송출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현재 상황이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 결과라 여기면서 보육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송출하지 않은 후 민원이 70~80% 정도 준 거 같아요. (A어린이집 원장 1)

송출을 안 하고 하고의 차이점은 확실히 보육 방해는 줄어들었어요. 민원의 횟수가 줄어들고 보육 방해가 줄어들고. 더불어 부모님들 민원도 줄어들었어요. (A어린이집 교사 1)

이제 미동의가 많아진다는 건 저는 이제 어쨌든 원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신뢰도는 높아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A어린이집 교사 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원 같은 경우는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여하튼 송출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부모가 내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실시간 감시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 문의를 받고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A어린이집 교사 1)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 시 보육: 혼란과 불안

실시간으로 영상정보가 송출된 시기의 보육활동에 대해 교사들은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시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육했던 교사도 이를 지켜보았던 학부모도 모두 불안했다고 토로하였다.

교사로서의 압박감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엄청 심해서 '많이 의식하면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육을 했던 것 같아요. (중략)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왜 생각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속에서는. (A어린이집 교사 1)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늘 아이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들은 왜 '내 아이가 스트레스 속에서 잘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못 하는지. (A어린이집 교사 2)

네트워크 카메라를 보실 때는 보시면서 결코 좋은 모습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딱 봤는데 '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 내 아이가 왜 이려고 있지?' '어? 내 아이가 왜 이 친구랑 이려고 있지?' 혹은 '내 아이가 왜 울고 있지?' 이렇게 무언가 이제 딱 그 모습을 봤을 때 엄마의 마음에 불안한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는 거죠. (A어린이집 교사 1)

저는 특별히 차이는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송출되었을 때랑 안 되었을 때. 크게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오히려 생각이 들었던 게 그거를 보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한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약간 오히려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안 봤을 때는 그냥 잘 지내고 있겠지 약간 막연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막상 봤을 때 이게 '마음이 편하다' 이런 거보다 '왜 우리 아이가 혼자 놀고 있을까?', '왜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봐주지 않으시지?'라는 되게 굳이 그냥 아이의 사생활에 내가 그걸 보면서 계속 개입을 하면서 '왜 저렇지?'라는 계속 의문점만 많이 생기고 약간 더 불안하다고 해야 하나? 어린이집을 그냥 딱 믿는 게 아니라 조금 '어 왜 그러지?' 하는 의문점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볼 때. (A어린이집 학부모 1)

학부모들은 실시간 영상정보 송출이 언어적 의사 표현능력이 부족한 영아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을 볼 수 있어서 안심되면서도 아이들을 비교하거나 부모들이 서로를 시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학부모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 의도와 다르게 부모들 모임에서 실시간으로 교사 행동의 문제점을 찾는 수단으로 작동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였다.

아무래도 다른 어머니들도 그러겠지만 0, 1세 때는 말을 못하니까 그 이유가 가장 송출하는 거에 큰 의미인 것 같고. 좀 더 말을 하면 그래도 집에 와서 말을 하니까. (중략) 친했던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선생님이 저희 애만 예뻐하더라. 개만 더 많이 안아주고 하는 것 같다. 선생님이 되게 많이 예뻐하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편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볼 수 있고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는지도 알 수 있지만 또 내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면서 왜 저 아이는 저렇게 해주고 왜 우리 애는 안 해주고. 그거를 또 선생님한테 표현을 다 하시니까 학부모들이. (A어린이집 학부모 1)

영상을 송출한 시기 엄마들 모임에 가끔 가면 영상을 같이 보면서 모여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요. 보면서 계속 문제점만 발견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전화해서. 선생님 바꾸라고,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A어린이집 학부모 2)

2) CCTV 운영 시 보육: 안전사고 관련 영상정보 열람은 신속하게 대응

A어린이집은 영상정보를 송출하지 않게 된 후에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하고 있었다. 안전사고 관련 영상정보 열람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으며, 학부모들도 영상을 확인하는 게 수월했다고 언급하였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안전사고는 열람신청서와 가해 유아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즉시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애가 다치면 마음이 조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빠르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딱 다쳤다 하면 바로 오시라고 해서 보여드리고. 근데 제가 먼저 모니터링을 하죠. 그 대신 하루 안에, 24시간 이내에 즉시, 즉시 대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접수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은 조금 신뢰를 하게 됐어요. (A어린이집 원장 1)

저도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놀라기도 하고 ‘도대체 어찌다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알아야 병원 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흔쾌히 “네, 어머니 보셔야죠”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중략) 서류 작성하고 당일 바로 봤어요. 2번 돌려 보여주시고 상황이 이러했다 얘기해주시고. 어렵게 확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A어린이집 학부모 1)

안전사고는 학부모들이 그냥 동의서 쓰고 다 열람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사건 사고 있을 때. (A어린이집 학부모 2)

안전사고 관련 영상정보 열람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들은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여겼으나 안전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물리고 꼬집고 뭐 하는 것 다, 저희는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어떤 해를 가했다’라는 건 무조건 다 안전사고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거든요.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A어린이집 교사 2)

저희는 안전사고는 즉시 열람이긴 해요. 다 즉시 열람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안 참아주거든요. 근데 안전사고의 종류가 많잖아요. 안전사고의 종류에서 안전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아이가 이 아이를 꼬집었어,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물었어. (중략) 아이의 행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충분히 보이는데, 엄마들은 딱 그것만 봐요. 그냥 내 아이가 물렸어, 누구 책임? 교사 책임. 단언적으로 딱 그건 거예요. 딱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엔 뭐가 돼요? 저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A어린이집 교사 1)

3) 공통된 합의가 없는 아동학대 기준

보육교사들은 명확하지 않은 아동학대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학부모가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명명하는 것만으로 교사가 아동학대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이들이 막 흐트러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안전사고에 민감하니까 탁 잡아야 되잖아요? 손을 탁 잡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만 보고 아동학대래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결국에는 우리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아동학대잖아요? 우리 아킬레스건은 아동학대예요. 그러면 모든 사건을 너무나 쉽게 아동학대로 귀결시켜버려요. 저 선생님이 아동학대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초라해지고 굉장히 침체 되죠. 정말 초라해져요. (A어린이집 교사 2)

만0세인데 아이가 표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중략) 근데 엄마는 그건 거예요. 아이의 말만 듣고. “선생님이 때때 때때 했어.”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CCTV를 보고 뭐 보고. 근데 나온 건 없지만 엄마는 계속 의심을 하면서 이 교사가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하나 잡아내고 싶은 거죠. 나갈 때까지. 그래서 올 1월에 나갔어요. (중략) 이 선생님은 너무 힘들어서 병가도 내고. 그래도 치유가 안 돼서 결국은 두 손 들고 본인이 나간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인이 나간 거예요. 보육교사한테는 ‘내가 어떻게 잘못 했어도 절대 속이는 건 아닌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A어린이집 교사 1)

라. 개선 요구

1) 부모교육의 필요성

A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부모를 위한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부모 대상 교육은 어린이집 자체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전사고가 없어야겠지만 나서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의심 사례로 계속해서 그거를 뭐 보여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사들한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부모교육이 필요해요. (A어린이집 원장 1)

부모들이 아이들 입소신청을 할 때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은 후 입소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 선생님에게 하지 않아야 할 언행, 아이들끼리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등 예전에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신선하더라고요. (A어린이집 학부모 1)

심지어는 같은 반 아이가 퇴소하기도 해요. 부모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 카메라 문제가 지금 끈 지 몇 년 되었는데도 이러거든요. 부모교육이 필요해요. (A어린이집 학부모 2)

저희는 계속 집중을 하는데, 집중함에도 이 많은 아이들을 혼자 교사가 본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만1세를 보는데 한 교사가 다섯 명을 보고 있어요. 어느 누가 그걸 인정을 해주나요? 안 해주는데, 그 안에서 어떤 작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다 비판해요. ‘너가 잘못했잖아. 너 뭐했니? 너 애 안 보고 뭐 했니?’ 나 애 보기 아니에요. 저 교사예요. 교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애 안 보고 뭐 했어?’ 조금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중략) 왜 보육교사에 대한 그 인식만 계속 그 바닥에서 그렇게 머물러서 교사를 힘들게 하는지 저는 이해는 안 되거든요. (A어린이집 교사 1)

학부모 인식개선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을 수십 차례 받아요. 얼마 전에는 아동학대 기관 센터에서 와서 받았죠. 인터넷, 오프라인 다 받아요,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예요. 막 받아요. 그런데 왜 입소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런 교육이 없죠? 왜 그런 보육체계와 보육사업 안내에는 교사는 아동학대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한다,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걸려지지 않는 학부모 교육 체계는 왜 정리가 안 되어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학부모 인식개선이 필요한 데 그 교육 체계를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맡기면 안 돼요. 여기 부모님들은 우리 교육 체계를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입소할 때 부모교육을 필수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어린이집 자체의 재량으로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A어린이집 교사 2)

2) 학부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체계 필요

A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영상정보 열람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계속 보육교사를 의심하면 학부모에게 일일교사로 참여하기를 권하거나 그 반에 특수교사를 투입하였다. 원장은 특수교사를 투입해서 특수교사와 함께 일주일간 교수 행동 패턴, 교수법을 확인하여 통계를 낸 뒤에 부모와 상담을 하였다. 최근에 이렇게 했음에도 계속 민원을 넣으며 교사를 포함하는 학부모가 있

어 퇴소를 권유했다고 원장은 언급하였다. A어린이집 원장은 퇴소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사도 학부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대처하는 내용이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선생님이 다른 교사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아이들한테도 소리를 지른다는 민원을 넣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잘 보시는 거예요, 아이들. 근데 원래도 잘 보는 분이신데 너무나 잘 보는데 어머님들한테 소문이 다 돈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시라고 해서 봤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그때는 하루 거 봐서 안 되고 일주일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장면이 없고 오히려 만1세들 무릎에 앉혀두고 진짜 저는 저라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잘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의심을 계속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사도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건의사항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교사는 유아반으로 올려줘라, 영아반에 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건의사항에 올리신 거예요. (중략) 계속 모함하셔서 엇그제 퇴소 서명했어요. 퇴소 매뉴얼 없잖아요. 매뉴얼이 좀 필요해요. 진짜 허위사실로 동료 어머니를 모함한다든가 놀이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인데도 그걸 문제 삼아서 작년에 교사가 두 달 병가를 쓰는 일도 있었거든요. (A어린이집 원장 1)

학부모들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대응 체계가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육사업안내 지침처럼 명시되었으면 좋겠어요. (A어린이집 교사 2)

2. B어린이집 사례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식

B어린이집은 수도권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61명의 영유아가 재원 중이며, 원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B어린이집 원장은 2007년부터 원을 운영했는데 2008년에 원에서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보육교직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였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법적 근거에 따라 기기를 교체했으며 기기의 노후화로 2019년 말에 기기를 임차하여 재설치하였다.

B어린이집에는 총 1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실에 7대, 공동놀이실에 1대, 현관에 1대, 조리실에 1대가 설치되어, FULL HD급 화질로 60일 이상 영상정보가 저장된다. 원장이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기를 임차한 업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을 매월 1회 시행하고 있다.

〈표 III-2-1〉 B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요

구분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종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화질) FULL HD급
설치시기 및 이유	• 2008년에 도난사건이 발생하여 안전을 위해 교직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설치 • 의무화 이후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 2015년 12월 화질이 좋은 기기로 교체 • 2019년 기기 교체
설치 운영책임관	• 원장이 책임관 역할 및 운영 담당 • 주임교사를 부관리자로 두어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
설치구역	• 설치카메라 대수: 10대 • 보육실 7대, 공동놀이실 1대, 현관 1대, 조리실 1대
안내판 기재사항	•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 촬영범위: 어린이집 실내·외 • 관리자: B어린이집 원장 • 연락처: 어린이집 전화번호 기재
내부 관리계획	• 어린이집 온라인 카페가 있으나 아이들 사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열람 관련 안내문은 배포하나 내부 관리계획을 따로 게시하고 있지는 않음
저장장치 관리	• 보관장소: 원장실 • 원장과 기기 대여업체 담당자만 저장장치에 접근 가능
점검시기	• 매월 1회
영상정보 열람 장소	• 원장실
개인정보보호 조치	• 모자이크(마스킹) 프로그램 구매
영상정보 저장기간 및 삭제 주기	• 60일 이상 저장 • 60일 경과 시 자동삭제
사무의 위탁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1달에 1회 업체에서 나와 정기점검)

자료: 1) B어린이집 원장님과 심층면담(2020년 6월 29일 진행)에서 수집한 내용임.

2) 안내판 기재사항은 B어린이집 현관문에서 확인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사안

B어린이집은 휴일보육 지정기관이다. 2010년 지정 이후 수요가 없었는데 2020년 2월부터 일요일에 보육을 희망하는 타원의 아동 수요가 발생하여 휴일보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영아 쌍둥이 2명이 월 1회 휴일보육을 이용하였다. 쌍둥이 어머니의 CCTV 열람 요청은 5월 휴일보육 이후에 발생하였다.

저희가 휴일보육 신청을 받아서 하면 선생님들이 당직제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저는 그 학부 모님을 처음 만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랑 주방선생님이 출근한 상황이었고, 아이들이 이제 만1세 아이들이고 두 명 쌍둥이다 보니 아무래도 헤어질 때 많이 울고 했어요. 주방선생님께서는 매번 나오셨으니까 많이 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걱정하셨는지 집에 하원할 때도 아이가 많이 울어서 그날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가셨어

요. 어머니가 월요일에 원장님께 전화하셨는데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해서 정서적 학대가 의심된다면서 열람을 요청하셨어요. (B어린이집 교사 4)

조리사선생님은 또 안타까운 마음에 조리선생님도 계속 나오셨으니까 애들이 울었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가엾다는 뜻으로 얘기 한 거죠. 조리사선생님은. 연령도 있으시고 안타깝고 막 이러시니까 그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지만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자꾸 울었는지에 꽃하니까. (B어린이집 원장 2)

B어린이집은 학부모의 영상정보 열람 요청이 거의 없는 기관이었기에 원장과 교사 모두 이러한 상황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특히 원장은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일시적 보육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열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도 조심스러웠다고 언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외부 민간업체의 도움을 받았다.

처음엔 되게 좀 너무 놀랐고요. 걱정도 많이 됐죠. 왜냐하면 CCTV라는 게 음성도 담기지 않고, 어머니가 보기에는 저희가 아무리 사각지대 없이 단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놀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걸 보고 오해를 하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혹시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아이랑 놀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해서요. (B어린이집 교사 4)

신청서 작성하고, 그리고 어머님한테 바로 안내해 드리고. 어머니가 주소지가 따로 있어서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오시고 신분증 갖고 오시는데 신분증을 또 안 가져오셔서 여권을 메일로 받아서 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당황해서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모자이크 처리하시는 프로그램 이사님과 통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절차들을 밝아 나갈 수 있었죠. (B어린이집 원장 2)

영상정보 열람은 원장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학부모가 참여 가능한 시간이 오전뿐이어서 보육을 해야 하는 해당 교사는 열람에 참여할 수 없었다. 6시간 분량의 영상을 원장과 학부모가 돌려보았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나 원장과 교사는 여전히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 어머님도 저희 원에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 원에서 안 나왔으면 평상시 다니던 원에 가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라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협박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중략) 교사는 아직도 힘들어해요. 아니면 말고 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일이 정말 계속 있을 수 있

잡아요. 저도, 제가 아까 감정적 장애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단어를 썼는데 꿈에 나타나요. 그 엄마가. 이게 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엄마가 너무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거에 대한 분한 감정이 있는 거죠. (B어린이집 원장 2)

다. CCTV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 CCTV 영상화면에 대한 의구심

B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CCTV가 안전사고나 의심 사례가 있을 때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녹화된 영상의 일부분이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경계하였다. 최근에 열람 요청이 있었던 교사는 자신이 아이를 위해서 한 행동이 녹화된 영상에서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아이가 막 휘청휘청해서 바로 잡아준 건데 어, 내가 잡아당겼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요즘엔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B어린이집 교사 3)

CCTV에서는 좀 행동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세게 보이냐 봐요. 여기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도 잠자는 시간에 제가 머리를 풀어주는 걸 보고 머리를 눌렀다고 원장님께 물어봤다고. “이게 머리를 누르는 장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머리 이렇게 사과 머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풀어주는 거였는데. 그런 것만 봐서도 영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이미 CCTV를 열람하기로 하신 부모님의 마음은 일단은 기분이나 이런 게 많이 착잡하시고 그런 상황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CCTV를 공정하게 공정성 있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B어린이집 교사 4)

2) 학부모와의 소통이 중요

B어린이집 운영위원인 학부모들은 최근 있었던 휴일보육 열람 요청 건에 대해 원장님을 통해 들었다고 언급하였다. 학부모들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린이집이 투명하게 학부모와 소통하기에 CCTV 열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투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먼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감추려고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큰 애 정말 조금 다쳐서 별거 아닌데도 다 정말 설명해주시고 친구랑 놀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됐다. 정말 상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CCTV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예 CCTV가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B어린이집 학부모 3)

설명 듣고 이해할만한 다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게 보게 되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중략) 저번에 한 번 고장 났을 때 고장 났다고 전화 주시고 다행히 그 주말에 바로 복구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 회의 때 그때 고장 났지만 바로 복구가 돼서 녹화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B어린이집 학부모 4)

3) 개인의 사생활 노출과 교사 인권의 문제는 있으나 CCTV는 필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생활 노출과 교사의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CCTV는 있어야 한다고 학부모들은 의견을 표하였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덜한 건 있어요. (중략) 선생님들도 그 원에 있는 동안 계속 그 교실에서 애들하고 같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은 선생님들도 인권이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 건데.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장치가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B어린이집 학부모 3)

‘당연히 있어야지’라는 생각. 어린이 보육시설인데. 한편으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항상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얼마나 싫을까는 상상은 돼요. 진짜 싫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 못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애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또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애들을 직접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필요한 장치는 한데 선생님들의 사생활 그런 게 좀 염려스럽기는 하죠. (B어린이집 학부모 4)

라. 개선 요구

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자문기구 필요

B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최근 영상정보 열람 요청 건을 진행하면서 자문받을 수 있는 공적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가이드라인에 열람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원장은 외부 민간업체에 자문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원장과 교사는 이러한 과정을 원장이나 교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거나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B어린이집 원장은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에서 사례관리가 함께 진행되어 공유되기를 원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콜센터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저 엄마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 소지가 있는지 없는 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혹시 위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뭘 말을 잘못해서 또 엄마의 뉘를 또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확인받는. (중략) 그렇다 보니 이제 민간업체로 원장님들 소개, 소개, 소개로 그러니까 민간업체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죠. (중략) 사례관리를 해서 혹시 원장들이 놓치는 것들이 없는가를 좀 걸러내 주는 작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남용하는 사례가 제발 없도록. (B어린이집 원장 2)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라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그런데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저랑 맞지 않는 학부모님이 혹시 있다면 이렇게 해서 저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교사를 위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교사 혼자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중략) 교사가 막상 혼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법적인 것도 원지도 모르겠고. 정말 많은 생각이. ‘만약에 어머님이 계속 오해하시고 그럼 어떡하지?’라고. 저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자문이나 상담센터가 지원을 해주시거나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B어린이집 교사 4)

2) 열람 후 사후조치

원장과 교사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영상정보를 열람했을 경우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 문제를 발견한 상황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 관한 대응 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열람 후 사후조치에는 교사의 심리치료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열람 이후 조치의 상황도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열람을 했다면 열람 이후에 자료 폐기나 처리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 부모가 고소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경우 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포함된다면 부모 패널티의 문제와 교사 심리치료의 문제도요.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가이드라인에 제시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죠. (B어린이집 원장 2)

가이드라인이나 어디를 봐도 사후 처리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가 풀리면 서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당연히 오해하신 분이 저희한테 사과도 하고 저희도 오해를 풀고 이렇게 더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사후 처리 그런 게 없어서 어머님들은 교사 얼굴도 안 보고 가시고. (B어린이집 교사 4)

B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했던 부모와 의심을 받았던 교사가 보육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무분별한 열람 요

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열람 절차와 사후 조치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며 열람 후에도 계속 의심을 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표명하였다.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패널티를. 정말 차라리 퇴소를 각오하고. 어차피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어린이집 생활이 엄마가 즐거워서 보내시겠어요? (B어린이집 원장 2)

제가 겪기도 했고 다른 동료 교사들이나 다른 원의 동료 교사들께서도 그렇고. 이유를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도 볼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나 상황이 아닌 그냥 이유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니까 저희의 무고함이나 이런 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제 경우와 같이 그냥 '아니면 됐지. 어 그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요. 저의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할 때 만약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가... 과도하게 신청하시는 분이 계속 신청한다는 사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게 있어서 미리 문서로 보여드렸으면 해요. 계속 의심을 하는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교사나 원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B어린이집 교사 4)

3)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위한 열람 관련 영상교육자료

B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상정보 열람과 관련된 영상교육자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교육하는 것이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에게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추가하였다.

저희 매년 아동학대 예방 교육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CCTV 그렇게 맨날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관련 교육도 현실적으로 한 20분 정도 영상으로 할 수 있게끔 영상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B어린이집 원장 2)

어린이집에 관한 거, 교사에 관한 거. 학부모에게도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였으면 해요. 어머니들도 CCTV 영상을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담아서요. (B어린이집 교사 3)

4) 인권 존중 문화 확산

교사와 학부모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열람에서 인권 존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보호가 제일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그 구성원 모두에 대한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어

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학부모도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보육 교사의 교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아쉬워하였다.

어린이집이 이루어지는 구성원은 아이들 영유아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 속에 다양한 사람이 많이 생활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인권 존중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B어린이집 교사 4)

요즘 엄마, 부모님들 중 되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문제가 터졌으면 제 아이를 보호해야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 조금 서로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교권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B어린이집 학부모 3)

3. C어린이집 사례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식

C어린이집은 수도권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48명의 영유아가 재원 중이며, 원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C어린이집은 2005년 개원 당시 학부모가 출입구에서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였으며,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19년 초에 기기를 교체하였다. C어린이집에는 총 15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실에 8대, 공동놀이실에 3대, 복도/현관에 2대, 건물 외부에 1대, 자료실에 1대가 설치되어, FULL HD급 화질로 60일 이상 영상정보가 저장된다. 원장이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기를 설치한 업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을 매월 1회 시행하고 있다.

C어린이집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들에게 CCTV 운영과 열람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었다. 오리엔테이션 때는 CCTV 관련 업체 전문가를 초빙하여 열람 진행과정과 영상정보의 특징에 대해 안내하면서 관련 업체가 만든 안내서를 학부모에게 배포하고 있었다.

〈표 III-3-1〉 C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요

구분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종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화질) FULL HD급
설치시기 및 이유	• 학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출입구에서 볼 수 있게 2005년 개원하면서 설치

구분	내용
설치 운영책임관	• 원장이 책임관 역할 및 운영 담당
설치구역	• 설치카메라 대수: 15대 • 보육실 8대, 공동놀이실 3대, 복도/현관 2대, 건물 외부 1대, 기타 1대
안내판 기재사항	•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 촬영범위: 어린이집 실내·외 • 관리자: C어린이집 원장 • 연락처: 어린이집 전화번호 기재
내부 관리계획	• 외부업체(마스크 처리업체)에서 제작한 내부 관리계획 서식과 안내지 사용 • 안내지에 열람요청 범위, 절차, 열람요청이 제한되는 경우, 책임과 비용, 영상 정보 제공의 제한, 개인영상정보 취득 동의서, 열람요청 진행 절차 동의서 관련 내용 포함됨
저장장치 관리	• 보관장소: 원장실 • 원장과 주임교사만 저장장치에 접근 가능
점검시기	• 매월 1회
영상정보 열람 장소	• 원장실
개인정보보호 조치	• 모자이크(마스크) 프로그램 구매
영상정보 저장기간 및 삭제 주기	• 60일 이상 저장 • 60일 경과 시 자동삭제
사무의 위탁 관련	• 원장이 관리 및 점검(노후화된 카메라 녹화 여부 확인) • 설치업체에서도 매월 1회 정기점검 시행

자료: 1) C어린이집 원장님과 심층면담(2020년 7월 7일 진행)에서 수집한 내용임.

2) 안내판 기재사항은 C어린이집 출입구에서 확인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사안

C어린이집 원장은 2009년부터 원을 운영하면서 CCTV 영상정보 열람과 관련된 두 건의 큰 사건을 경험했다. 한 건은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다른 건은 2018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이었다.

2015년 의무화 이전에 있었던 CCTV 영상정보 열람 사건은 만4세 아동이 특정 교사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말한 게 발단이 되었다. 영상정보를 원장과 학부모가 함께 열람했지만 해당 교사와 아이가 만나는 시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건은 다른 교사들이 추가되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로 이어졌고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아동의 아버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에도 아동과 아동의 동생은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다.

트라우마가 많이 커요. 그 아빠로 인해서 CCTV를 보자고 하면 심장이 내려앉는 거예요. 기억이 다시 나는 거죠. 그때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교사들이. 내가 죄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안했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밝혀졌는데도 그 아이와 부모를 계속 봐야 한다는 것. 부모를 같이 봐야한다는 거가. (C어린이집 원장 3)

2018년에 있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은 만1세반 영아 어머니가 점심시간에 갑자기 퇴소를 하겠다고 원을 방문한 후 일주일 뒤에 경찰 신고가 들어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관련 교사는 억울함과 무력감을 호소하다 결과가 나온 이후 퇴사하였다.

아이가 퇴소를 한 지 1주일이 넘는 아이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5월 말에 그만둔 거예요. 1주일 있다가 신고를 했대요. 그 해 5월부터 6개월 이용한 엄마였어요. 아이 말만 듣고 엄마가 신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고 이유는 때렸다고. 누구누구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그래서 경찰이 CCTV 다 들고 가시고 저희가 소명자료 다 하고, 그 아이에 대한 관찰, 엄마랑 상담했던 부분 두껍게 이만한 책으로 해서 보냈으니까. 그 아이에 대한 건 교사들이 보육일지나 전화 상담한 것 자세하게 쓴 게 있어서 작성해서 보내드렸어요. 교사는 이런 교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소명을 하고, 무혐의로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고 그 교사는 그만두고. 원래는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안했는데 왜 그만 두냐고 잡았어요. 근데 결과 나오고 바로 그만두셨어요. 경력교사였어요. 7, 8년. (중략) 저희가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교사가 엄마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고 참으라고 했어요. 교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C어린이집 원장 3)

해당 교사는 못 먹고 못 자고, 토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요. (C어린이집 교사 5)

C어린이집 원장은 이러한 과정을 처리할 때 외부 민간업체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도 학부모의 열람 요청이 있으면 외부 민간업체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저도 자주 절차를 잊어버려서. CCTV를 엄마가 열람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먼저 전화해요. 이런 일이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C어린이집 원장 3)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경험

1) 보육교직원의 행동 위축과 자기 규제

C어린이집 원장과 두 사건을 함께 경험했던 교사들은 사건 이후로 보육활동 시 행동이 위축된다고 고백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며 보육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것도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안 하게 되는 거죠. 사고 없이 잘 지나가게 터치를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크죠. (중략) 엄마들한테도 사고 나면 바로 즉시. 그리고 상처가 아침에 있는 거면 바로 전화해서 어머니에게 ‘그 상처 보셨어요?’ 라고 꼭 확인하고요. 얼굴을 만진 다거나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너무 예뻐해서 안아주려고 하다가도 안 되지 가만히 있어야지 해요. (C어린이집 원장 3)

교사들은 행동이 위축돼요. 아이는 특히 말 못하는 영아시기에 많은 언어자극을 주고, 눈맞춤을 하고,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교사의 행동이 위축돼요. (중략) 엄마들이 사람을 부리듯이 마치 이게 권력인 냥 맘에 안 들면 바로 CCTV 열람할 거라고 해요.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C어린이집 교사 5)

일단 위에서 쓰고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작고 교사들은 몸이 크고 하니까. 그냥 교사가 잡고 걸었을 뿐인데, 아이 몸이 들썩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예뻐서 엉덩이 ‘오구오구 잘했다’ 했는데 때리는 거로 보일 수 있겠다 싶고요. 애들 터치하면 안 되고, 기저귀 갈 때도 최대한 스스로 일어나고 교사는 잡아주기보다는 바라보게끔 되는 것 같기는 해요. (C어린이집 교사 6)

2) 신뢰의 문제

C어린이집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보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안을 학부모에게 수시로 알리고 있었다.

여기 어린이집이 아주 작은 상처라도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이어서 다치거나 물렸거나 싸웠거나 소리를 질렀거나 할 때 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CCTV를 열람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해봤어요. (C어린이집 학부모 5)

이러한 소통의 과정에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는 학부모의 반응은 보육교직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 이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 자리에서 보여 달라고 하면 가슴이 내려앉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아, 나를 못 믿는 거구나. 교사를 못 믿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교사들을 못 믿게 되는 거고. 무서워서 어린이집 운영을 못 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C어린이집 원장 3)

엄마들이 안 믿는다고 얘기는 안 해요. 교사 입장에서는 본다고 하는 순간 ‘아, 내 말 못 믿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교사를 못 믿으면서 왜 보내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금쪽같은 내 새끼인데 그렇게 못 믿으면서 왜 사지로 보내지 하는 생각,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아이들을 봐야하고. 심지어 엄마가 CCTV를 보는 상황에

서도 저희는 그 아이를 돌봐야 해요, 교실에서. (C어린이집 교사 5)

한편, 아동의 안전사고를 설명하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보이는 신뢰의 말은 교사의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교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학부모가 했던 말을 되뇌며 감사를 표했다.

최근에 저는 큰 사고 있었어요. 아이가 가다가 넘어져서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괜찮아요, 선생님. 아이들 한두 명 보는 것 아닌데”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물날 것 같더라고요. 그 사고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큰 사고였고 응급실 가서 꿰맸는데. 그런데도 “선생님 놀라셨죠”라고 하셨을 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 너무 마음 아프실 텐데 그거 너무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했어요. “선생님이 뭐가 죄송한가요. 집에서도 많이 다쳐요. 물론 아이가 적게 다친 게 아니니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선생님 아까 전화할 때 목소리 너무 떨리고 놀라신 것 같았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그 아이 치료받고 오면 진짜 더 예뻐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C어린이집 교사 5)

라. 개선 요구

1) 자문/중재기구 필요

C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중재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재 역할을 해주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희는 어머니께서 경찰에 바로 전화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담당관이 연락받고 온 거였는데. 만약에 학부모가 신고를 했으면 사유가 뭔지를 알아보는 중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자가 없고 신고 했다고 그냥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왜 그러신지, 원이랑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지요?” 이런 식으로 안내해주는 중간자가 있었으면 해요. 그냥 바로 경찰이 나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중재를 해서 엄마들도 ‘아, 원이랑 먼저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이랑 CCTV를 먼저 보라고 안내해 줄 수도 있잖아요. (C어린이집 원장 3)

엄마들이 CCTV 보기 전에 체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하는 상황인지를 한번은 걸러볼 수 있는 중간 장치, 타협할 수 있는 완충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가 봐야 하는지,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걸 점검을 해보고 걸러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고하면 무조건 경찰이 오는 게 아니라. (C어린이집 교사 6)

중간에서 비밀유지가 잘 되는 기관이라든지, 콜센터의 상담이 있으면 영상정보에 대해서 엄

마들이 사실 두려워하는데, 어린이집에 요구하는 것도 두렵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애를 맡기는 입장에서 난감한데 그런 사람이나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중략) 먼저 물어보는 콜센터라도 있었으면 해요. 각 구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먼저 거기에 물어본다든지. (C어린이집 학부모 5)

2) 열람 후 사후조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어린이집은 사실 여부를 떠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C어린이집 원장은 토로하였다. 이런 경험을 함께 했던 교사들은 열람 후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그 기간부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감사 준비 나오죠. 또 거기에 교사들 인터뷰하고, 학부모님들이 ‘거기가 아동학대가 신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원을 믿지 않거든요. 원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교사들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C어린이집 원장 3)

열람을 했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런 게 아니었을 경우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님 말고 식이 아니라, 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C어린이집 교사 5)

사실 지금 어린이집은 자리도 많이 비거든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CCTV를 한번 열람 요청하면 교사는 무력감도 생기고, 아무튼 좀 그래요. 그 감정이 좀 가는데, 엄마가 사과를 안 할 경우 “보고나서 아무 말도 안 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CCTV를 보면 여러 가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거나 교사를 의심해서 죄송하다거나 이런 말은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C어린이집 교사 5)

3)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영아반 아동 수가 많다고 언급하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CCTV의 본래 설치 목적인 영유아의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1세반은 너무 많은 인원수예요.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한명의 교사가 아이 하나를 기저귀 같이 하거나 옷을 갈아입히거나 하면 4명은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C어린이집 원장 3)

너무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져야 해요. 한 단계씩 내려가면 딱 맞아요. 만1세는 1:5거든요 지금, 1:3. 만2세는 1:5 그렇게 하면 딱 맞아요. (중략) 제가 오늘도 기저귀를

갈면서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하고 있구나. 기계처럼 기저귀를 갈았거든요. 그리고 땡 하자마자 4명을 데리고 양치를 시키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안 맞아요. (C어린이집 교사 5)

대부분의 사건들이 아이 재울 때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자야 선생님들이 일할 시간이 확보되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했던 건, 인력 확충이 빨리 더 많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명이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다는 것 자체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업무의 강도도 너무 높은데. 투 담임 쓰리 담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 안에 있는 적정인원과 그 안의 선생님 배치 숫자가 빨리 더 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결국 CCTV를 만든 이유도 다 학대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똑같이 뉴스마다 낮잠시간에 아이들 안 잔다고. 사건이 많은 이유가 선생님들의 휴식권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관된 일인 것 같아서. (C어린이집 학부모 6)

4. D어린이집 사례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식

D어린이집은 수도권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40명의 영유아가 재원 중이며, 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D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2015년 11월에 총 7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실에 3대, 공동놀이실에 1대, 실외놀이터에 1대, 현관에 1대, 건물 외부에 1대가 설치되어, FULL HD 급 화질로 60일 이상 영상정보가 저장된다. 원장이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기를 설치한 업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을 매월 1회 시행하고 있다.

〈표 III-4-1〉 D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요

구분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종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화질) FULL HD급
설치시기 및 이유	• 2015년 11월에 어린이집 CCTV 의무화로 설치
설치 운영책임관	• 원장이 책임관 역할 및 운영 담당
설치구역	• 설치카메라 대수: 총 7대 • 보육실 3대, 공동놀이실 1대, 실외놀이터 1대, 현관 1대, 건물 외부 1대
안내판 기재사항	• 촬영목적: 어린이 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 촬영범위: 보육실, 현관입구, 실외놀이터 • 책임자: D어린이집 원장(연락처 기재)

구분	내용
내부 관리계획	• 어린이집 온라인 카페에 게시
저장장치 관리	• 보관장소: 원장실 • 원장과 주임교사만 저장장치에 접근 가능
점검시기	• 매월 1회
영상정보 열람 장소	• 원장실
개인정보보호 조치	• 모자이크(마스킹) 프로그램 구매
영상정보 저장기간 및 삭제 주기	• 60일 이상 저장 • 60일 경과 시 자동삭제
사무의 위탁 관련	• 원장이 관리 및 점검 • 점검 시 문제가 있으면 CCTV 설치업체에 의뢰

자료: 1) D어린이집 원장님과 심층면담(2020년 7월 9일 진행)에서 수집한 내용임.

2) 안내판 기재사항은 D어린이집 출입구에서 확인함.

나. CCTV 관련 사안

D어린이집 원장은 2018년에 학부모로부터 CCTV 영상정보 1년 분량을 열람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유는 자녀가 폭력적으로 변해 어린이집에서의 일과를 열람하고 싶다는 거였다.

CCTV를 1년치를 다 보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저희는 최대 60일만 보관한다, 그래서 60일분만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요청서에 보면, 여기 어린이집을 다닌 이후로 애가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생활 1년치를 다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래 애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냐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이 그 전과는 달리 폭력적으로 변하고 소리를 지르므로 어린이집에서의 일과를 열람하고자 함’ 이라고 쓰여 있네요. (D어린이집 원장 4)

D어린이집은 자체 영상열람 내규에 따라 요청 영상의 열람시간을 어린이집의 고유 보육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1회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D어린이집 원장과 열람을 요청했던 학부모는 매일 2시간씩 5일 동안 영상정보를 열람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열람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그 반에 있던 자폐성향 아이와 보조교사였다.

모자이크를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그땐 처음이라 모자이크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약간 자폐성향이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통제가 잘 안 되고, 잠잘 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만2세 때 반 선생님이 깨는 깨안고 자도 된다고 가르쳐 준거예요. 그래서 만3세반 보조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발버둥 치면 꼭 안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5일 동

안 영상을 보더니 당신 아이한테는 별것 없으니까 그 아이를 지적하는 거예요. (D어린이집 원장 4)

이러한 상황은 어린이집 보육활동을 운영하는 데 지장을 주었다. 원장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다른 일 처리를 할 수 없었고 보육교사들은 의욕을 잃었다고 토로하였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원장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항을 설명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더 이상의 열람을 거부하기로 결정내리고 해당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였다. 열람 거부 이후 해당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을 때렸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다.

더 이상은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알겠다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안일하게 많이 보셨는데 아무런 장면이 없었으니까 신고를 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들고 온 신고 종이를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의 가슴을 때리고’ 그런 장면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렇게도 신고를 할 수 있구나. 신고를 하니까 무조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오시더라고요. 경찰관들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거 언제 다 보냐고 고민이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서 보신다고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대로 오셔서 그 반 아이들 다 상담하고 선생님이 누구를 때렸는지에 대해서 묻고. 저는 동의서 다 받아드리고, “누가 누구 때린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데 애들은 개가 맨날 선생님을 때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면 선생님을 막 때리고 발로 찬 걸 이야기한 거예요. (D어린이집 원장 4)

이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어 혐의가 없다고 종료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관련 교사들은 사건 이후 심리적 두려움과 고통으로 모두 퇴사하였다. 면담에 참여했던 교사들도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하였다. 이 사건으로 D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과 학부모의 소통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해당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한 달 동안 병원을 가게 될 정도였어요. 그것 때문에 신체적인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과도 다니고. 좀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만두셨어요. (중략) 저희도 거의 1년 맘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봐야 하고. (D어린이집 교사 7)

무서운 게 컸어요. 왜냐면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조사받고 그러니까. (D어린이집 교사 8)

CCTV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교사회의 때. 그리고 굉장히 교사교육도 열심히 하고 엄마들 한 분 한 분 신경을 많이 쓰고, 뭔가 서운함이 없게끔. 뭔가 의심 가는 부분이 없게끔. 그래서 엄마들이 선생님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게끔. ‘우리 선생님은 내

가 편하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여기게 항상 노력하라고 해요. 우리 애가 거짓말을 해도 '설마 우리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늘 잘 하시라고, 늘 소통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일하는 이상..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진짜 많이 해줬어요. (D어린이집 원장 4)

다. CCTV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 보육교직원의 자기 규제와 자기 보호

2018년의 열람 사건은 그것을 경험했던 보육교직원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D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면서 학부모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정말 처음 대처를 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계속 그러거든요. 절대 의심의 여지를 주지 마라. 이만큼만 있어도 다 설명을 해줘라. 선생님이 그 상황을 봤다는 걸 다 이야기 해줘라. (D어린이집 원장 4)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저희는 예전에 열람 경험이 있고, 또 저희의 실제 행동이 화면상으로 비춰지는 행동이 아니었는데 크게 과장되어서 보이기도 하고. 오해 받을 것 같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손을 잡아주고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앉아버리면 뭔가 내가 친 거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게 찝힐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게 돼요. (D어린이집 교사 7)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이가 앉아버리면 그게 당긴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때는 손을 뉘버려요. 그냥 같이 가고 싶은 건데. (D어린이집 교사 8)

교사들은 아동의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예전에는 하원할 때 학부모와 대화로 나누었던 사항을 요즘에는 사진을 찍어두거나 바로 연락하여 물어보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대처가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침에 올 때 애 얼굴을 자세히 봐요. 상처가 있나. 그래서 미리 물어봐요, 아침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다쳤는데 모르고 보내시는 경우, 저희도 이쪽에서는 사전에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런 상황을. 아니면 그런 건 저희가 찍어 놓기도 하고. 상처가 있는 거는 미리 사진을 찍어 봤다가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오히려. "누구누구가 어디에 멍이 들었는데 집에서 다친 건가요?" 하고 물어봐요. CCTV가 없어도 다쳤나 육안으로 파악하는 건 보육교사로서 해야 하는 일인데, 조금 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D어린이집 교사 7)

그런 게 다 저희를 보호하는 거죠. (D어린이집 교사 8)

2) CCTV 존재 자체로 안심

D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당연시하였다. 원장은 학부모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영상정보 열람이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무분별한 열람이 지양되기를 원했다.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CCTV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CCTV가 있기에 안심된다고 언급하였다.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의무이기도 하고요. 체계적으로 잘 정착돼서 너무 억지로 1년치 보여 달라는 그런 것만 없었으면 해요. (D어린이집 원장 4)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안심이 되죠. 요즘에는 없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중략) 어린이집에 CCTV가 없으면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긴 없어?' 라고. '요즘에 없는 데가 어딴' 하고. (D어린이집 학부모 7)

3) 불편함과 조심스러움

보육교사들은 자세한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려는 학부모의 반응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건 학부모들에게도 조심스러운 사안이었다.

불편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매 순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만, 교사와 나쁜 관계가 아닌데 그 걸 못 믿으시고. (중략) 교사가 그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신뢰 관계도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면 보여드릴 수밖에 없죠. (D어린이집 교사 7)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의 심정보다 우리의 심정이 열 배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말 딱 들었을 때. (D어린이집 교사 8)

CCTV는 극으로 치달았을 때 보는 거랄까. (D어린이집 학부모 8)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중략) 못 다니는 상황에. 만약 다니지 않을 상황에 보여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다른 어린이집에 우선 넣어 놓고. 우선 보내야 하니까. (D어린이집 학부모 7)

4) 소통하기와 유대관계 형성

D어린이집의 CCTV 내부 관리계획은 온라인 카페에 게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확인한 학부모는 많지 않았다.

2019년 2월 27일에 CCTV 내부관리계획이라고 올리신 게 있어요. (어린이집 카페를 확인하신 후) 그런데 진짜 조회 수가 얼마 없어요. 30개. 많이 안 본다는 거죠. (D어린이집 학부모 8)

교사들은 투명하게 밝힐 것은 밝히며 학부모와 신뢰 관계가 구축되길 원했다. 학부모들도 신뢰와 소통을 강조하며 학부모와 교사가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학부모님들께 오픈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학부모님들도 일단 아이 생활 시설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잖아요. 단체생활에 있어서 저는 오픈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쯤 오셔서 우리 아이 생활하는 모습도 보시고. (D어린이집 교사 7)

제일 우선적인 건 신뢰감이에요. 저희도 거짓말을 안 하고 그대로 알려드리고, 그대로 알려주면 집에서도 노력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된다면. (D어린이집 교사 8)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믿고 보내는 거라. 한 번 봐야지 이런 생각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D어린이집 학부모 7)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서로 최선을 다하는 거. 저도 선생님한테 애를 하루종일 고생해서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 애 너무 늦게 안 찾으려고 한다든지. 선생님도 천천히 오셔도 된다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는 거. 선생님과 유대관계라고 해야 하나. 아이를 맡길 때 유대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라도 잘 해주고. 그런 게 쌓아가는 거. 선생님하고 소통하고, 유대관계 갖고, 서로 아이를 둘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D어린이집 학부모 8)

라. 개선 요구

1) 자문기구 필요

D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CCTV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장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원장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대응했다면서 교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고 제안하였다. 학부모들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자문이 필요해요. 그런 데라도.. 한 번 확 당하고 나면 저처럼 착착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는 너무 무서워요. 당황되고.. 머리도 아예지고.. 어떻게든 빨리 조용히 끝내고 싶고, 무섭더라고요. (D어린이집 원장 4)

원장님이 오하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입장이고, 저희는 알려주시는 걸 전달받아서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원장님들도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외부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기는 했어요. CCTV 업체에 이런 데에. 저희도 언젠가는 원장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쉽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D어린이집 교사 7)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습득이 빠르잖아요. (D어린이집 학부모 7)

열람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마들은 궁금해도 거의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궁금함의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런 절차를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해요. (D어린이집 학부모 8)

2) 부모교육 필요

D어린이집 교사들은 학부모를 위한 CCTV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부모교육은 외부 전문가가 진행할 때 효과적이라는 것도 강조하였다.

모르시고 무조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하고, 안 보여주면 안 되지만.. 절차에 대해서 쉽게 보는 게 아닌, 그런 절차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좋겠어요. 단지 내 기분에 따라서 정서학대다 뭐다 해서 보여 달라고 하는 건 보육에 지장을 주는 거니까요. (D어린이집 교사 7)

부모교육도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하면, 좀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D어린이집 교사 8)

5. E어린이집 사례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식

E어린이집은 수도권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66명의 영유아가 재원 중이며, 원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어린이집은 2001년 개원 당시 건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이미 설치되어 있던 CCTV도 함께 인수하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다. 처음 설치 당시에는 CCTV를 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참관실 역할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했냐면 참관실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교실로 들어가면 객관적인 상황을 보기 어렵고 자기한테만 매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니터 좀 큰 거 있었으니까 자기 아이 행동 좀 분석하고, 어린이집에서 어떤 걸 좀 도와주면 좋겠냐 개별면담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약간 그룹면담처럼. (E어린이집 원장 5)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로는 예전과 같이 참관실 대응으로 카메라를 활용하지는 않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다. E어린이집에는 보육실 5대, 놀이터 4대, 현관 1개, 자료실 1대의 총 11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FULL HD급 화질로 60일 이상 영상정보가 저장된다. 원장이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기를 임차한 업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을 매월 1회 시행하고 있다. E어린이집의 카메라 설치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놀이터다. E어린이집 놀이터에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4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놀이터는 4개가 있어요. 지금은 애들이 막 뛰다가 넘어지면 혹시 그럴 수 있어서. 보니까 전에 한 번 애가 뛰다가 살짝 다쳤는데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외놀이터에는 4개나 있어요. (E어린이집 원장 5)

〈표 III-5-1〉 E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요

구분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종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화질) FULL HD급
설치시기 및 이유	• 2001년 개원하면서 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설치(참관실 대응) • 2015년 의무화 이후 기기를 업그레이드함 • 2020년 화질 개선을 위해 기기를 임차하여 교체
설치 운영책임관	• 원장이 책임관 역할 및 운영 담당
설치구역	• 설치카메라 대수: 11대 • 보육실 5대, 놀이터 4대, 현관 1대, 자료실 1대
안내판 기재사항	• 목적: 어린이 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 설치장소(촬영범위): 보육실 (5), 놀이터(4), 자료실 • 책임관: ○○어린이집 원장
내부 관리계획	•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저장장치 관리	• 보관장소: 원장실 • 잠금장치 비밀번호는 원장과 설치업체 담당자만 알고 있음
점검시기	• 매월 1회
영상정보 열람 장소	• 원장실
개인정보보호 조치	• 모자이크(마스킹)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 없었음

구분	내용
영상정보 저장기간 및 삭제 주기	• 60일 이상 저장 • 60일 경과 시 자동삭제
사무의 위탁 관련	• 원장이 직접 관리 및 점검 수행 • 점검 시 문제가 있으면 CCTV를 임차한 업체에 의뢰

자료: 1) E어린이집 원장님과의 심층면담(2020년 7월 15일 진행)에서 수집한 내용임.
2) 안내판 기재사항은 E어린이집 현관문에서 확인함.

나. CCTV 관련 사안

E어린이집은 2001년 개원부터 지금까지 CCTV 열람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분쟁이 없었다. E어린이집 원장은 오히려 CCTV 열람으로 억울한 의심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2015년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한 명 다친 적이 있어요. (중략) 아이는 엄마한테 혼날까 봐 엄마가 심각하게 얘기하러니까 그 상황을 친구랑 놀다가 그랬어 하는데, 발차기하고 놀다가 그런 거예요. 저희도 CCTV가 없으면 상황을 알 수 없고 어머니는 확대해석하고 선생님을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CCTV 봤는데 큰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했는데 꼭 봐야겠다고 하셔서 같이 봤는데 엄청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의심했거든요. 단번에 웃으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끝났거든요. (E어린이집 원장 5)

E어린이집도 학부모들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열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E어린이집의 내부 구조와 운영방침에서 찾을 수 있다. E어린이집은 모든 보육실의 복도 쪽 창문이 넓은 일방경으로 되어있다. CCTV 열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학부모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원장은 학부모에게 일방경을 통해 자녀의 반을 관찰하거나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었다.

엄마는 쉽게 생각하고 보자고 한 건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CCTV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궁금하시면 어린이집에 와서 일방경 역할을 하는 창문이 있으니 거기서 관찰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CCTV를 보는 것보다는 그런... 저희가 열린어린이집 활동을 많이 하니까 부모님들 늘 오시는데... (중략) CCTV 보려면 원래 아이가 다쳤거나 아동학대 의심이나 이런 내용이어야 하는 데 해당이 안 되는 거 같고 운영위원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보시라 해서 어머니가 밖에서 관찰하고 교실 안에 들어가고 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E어린이집 원장 5)

다. CCTV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 확실한 안내 및 소통의 중요성

E어린이집 원장은 신학기 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CCTV나 어린이집 운영방침에 대해 확실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기기에 초점을 두고 열람 여부를 논하는 것보다 학부모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두 시간을 하거든요. 이 책자 펴서 1페이지, 2페이지 설명하며 이렇게 다 하는데 이때 잘해야 하더라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 부모님이 해야 하는 것, 요구할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을 확실히 하는 거죠. (E어린이집 원장 5)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머님들끼리 카톡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봐요. CCTV 보고 규명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저한테는 요청 안 하였고. 애가 허벅지에 꼬집힌 손톱자국이 있었나 봐요. 애들한테 물어보니 '선생님이 맨날 꼬집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봤는데 선생님 이 의자에 드러눕고 바로 앉지 않으니까 의자를 잡아주면서 살짝 잡혔나 봐요. 그거와 별개로 엄마들 카톡방에서 어머님들끼리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문제가 야기되면 어떻게 할 거냐, 확신을 갖고 CCTV를 요청할 거냐. 그래서 본인들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끝났대요. 저희가 엄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밴드도 있고. 그래서 전체 어떤 상황이 생기면 공지를 한다거나 공유가 잘 돼요. (중략) 막는 것보다 열려 있으면 어머님들끼리 알아서 정하더라고요. 사실 CCTV가 불신이라는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 남겨놓고 역기능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많이 열어놓고 소통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E어린이집 원장 5)

E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의 개방성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코로나 전에는 그냥 오셔서 작년 같으면 외부 방문으로도 보고 계시고, 저희도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기도 하시고요. 어머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통방이 있잖아요. '제가 갔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CCTV를 보자는 경우가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어린이집 교사 9)

뭐든지 오픈을 해요,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야외활동 갈 때도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저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맨날 참여해서 같이 다니고,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텃밭에 물도 같이 주고, 같이 레고 활동도 하고, 소운동화처럼 레크레이션도 하고. (E어린이집 학부모 10)

워킹맘들도 잠깐 짬 내서 와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실제 들어와서 교실도 오픈되어 있고 하니까. 복도, 창문도 크게 되어있어서 보이니까 CCTV가 솔직히 없더라도 별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어린이집 학부모 9)

2) CCTV는 보호 장치

E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는 각자의 관점에서 CCTV를 자신을 또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인식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E어린이집 교사들은 타원에서 근무할 당시 학부모로부터 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CCTV가 자신을 방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선생님들한테 많이 그러죠. 아이가 잘못했거나 무슨 행동의 잘못이 있다면 CCTV 앞에서 해라, 그래야지 우리의 보호막이 된다. (중략) 저를 방어하는 방법으로.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요. (E어린이집 교사 9)

저는 순기능은 저희 보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E어린이집 교사 10)

안전하기도 하고, 선생님 입장은 모르겠지만, 첫째로는 CCTV를 안전하다는 의미로 되게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E어린이집 학부모 9)

CCTV라는 건 급한 사건이 생겼을 때 보지만, 이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죠. 무슨 일이 났을 때 객관적으로 촬영이 되고 있으니 안심이 되죠. (E어린이집 학부모 10)

라. 개선 요구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간결한 지침 안내서 필요

E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간결한 방식의 지침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면담을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던 학부모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학부모도 알 필요가 있다면서 간결하게 지침 안내서를 제작해달라고 제안하였다.

너무 길어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요. (중략) CCTV도 신뢰를 위한 메시지를 좀 더 담고 어린이집이든 엄마들이든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걸 한 장에 딱 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너무 길어요. (E어린이집 원장 5)

이번에 이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길게 말고 이걸 조금 압축을 해서. (E어린이집 학부모 9)

2) 제도개선 필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E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보육교사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게 우리 안에서 힘들다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린이집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동학대 왜 발생했는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린이집은 스트레스가 집약되는 곳인데 이걸 교사들의 인성으로만 몰아가니까. (중략) CCTV의 목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과 예방적인 차원을 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아동학대만 강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E어린이집 원장 5)

교사 대 아동 비율이요. (중략) 아이들에게 3명과 12명은 집중이 틀리거든요, 교사도요. 아동과 교사의 비율이 적정하다 보면 CCTV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저도 공감이 돼요. 아이들은 많은데 교사는 1명이고, 교사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획적인 아동학대는 안 되는 게 맞는데요. 우발적인 아동학대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교사 입장에서요. (E어린이집 교사 9)

CCTV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교사가 한 명 더 계시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더라고요. (E어린이집 교사 10)

3) 보육교사를 위한 방문상담 서비스

어린이집 CCTV 열람과 관련된 사후 조치로 교사들은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교사를 위한 상담 서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내가 상처받은 건 절대 잊히지 않거든요. (중략) 교사들이 들어서 위안이 될 수 있는 말들, 엄마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힘든 아이인데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습득해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엄마들과 상담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E어린이집 교사 10)

근데 이 교육도요, 저는 대집단보다 소집단으로. 저희 원에 찾아오시는, 방문해주셔서 저희의 사례를 이야기 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저희 마음을 좀 풀어주시는. (E어린이집 교사 9)

6. 소결

본 장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관련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운영방식에서 참고할 사안이 있는 어린이집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사례들을 종합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열람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는 불편하지만 자신을 보호해 줄 장치였고, 학부모에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장치였다. 어린이집이 열린 공간일 때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더 신뢰했고, 일일교사 등의 다양한 학부모 참여가 많을수록 학부모의 보육교사에 대한 이해는 높았다.

둘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였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학부모가 신뢰하길 원했고, 학부모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교사가 자세하게 알려주길 원했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영유아를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자문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CCTV 운영과 열람에 관해 수월하게 물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기를 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콜센터 같은 곳이 있어 필요할 때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부모교육 또는 학부모 대상 CCTV 열람 관련 교육을 요구하였다. 보육교직원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방문 교육이나 공신력 있는 영상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배포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그 사건 이후로 보육활동에서 행동이 위축되었으며 자신을 더 규제했다고 토로하였다. 무혐의 처리까지 약 3개월에서 1년의 시간 동안 신고를 당한 교사와 이를 함께 대응했던 보육교직원은 심리적·신체적 고통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열람 후 사후조치로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보육교직원을 위한 특별 방문상담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와 교사의 전문성 함양 등 이를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표 III-6-1〉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

구분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A어린이집	• 부모교육 필요 • 보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부모에 대한 퇴소 지침 필요	• 부모교육 필요 •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개선 • 학부모의 허위사실 유포 관련 대응 체계 필요	• 부모교육 필요
B어린이집	• 운영 및 열람 관련 콜센터/자문기구 필요(사례관리) • 열람 후 사후조치(의심을 반박하는 학부모에 대한 대응, 교사 심리치료 포함) • 열람 관련 영상교육자료	• 열람 관련 자문기구 필요 • 열람 후 사후조치 • 열람 관련 영상교육자료 •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인권 존중 문화 확산
C어린이집	• 자문/중재기구 필요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자문기구 필요 • 열람 후 사후 조치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자문기구 필요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D어린이집	• 자문기구 필요	• 자문기구 필요 • 부모교육	• 자문기구 필요
E어린이집	• 간결한 CCTV 지침 안내서 필요 • CCTV의 안전과 예방적 차원 강조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함양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보육교사를 위한 방문상담 서비스	• 간결한 CCTV 지침 안내서 필요

주: 본 연구의 심층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구성함.

IV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개선 요구

- 0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0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 03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 04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 05 보칙
- 06 소결

IV.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개선 요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로 집단을 구분한 후 가이드라인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개선 요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내용을 탐색하였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1) 사전 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련 사전 의견 수렴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에서는 학부모 총회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원장 집단에서는 업무 진행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부모 총회의 개최’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도 전체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한계가 있으므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신학기 부모 오리엔테이션 등)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영향을 주기에 사전 의견 수렴 대상 범위를 ‘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전 의견 수렴과 함께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안내 및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학부모 집단의 의견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전 공

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부분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경우 입소 상담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인 보호자(학부모)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목적 및 내부 관리계획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VI-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사전 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학부모 총회 기준 제시 필요
학계/유관기관	•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사전 의견 수렴과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안내 및 학부모, 보육교직원의 동의절차가 필요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에서 ‘교사’를 ‘보육교직원’으로 수정 필요
원장	• 업무 현실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부모 총회의 개최’ 문구 삭제 필요
학부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에 대한 사전 공지 필요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관련해서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할 수 있으나 자체 점검 등 개인영상 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집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에 화질뿐 아니라 카메라 렌즈의 구경과 화각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기를 원했다. 원장 집단에서는 기기 교체와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육교사 집단은 공통되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이 있기를 원했다. 보육교사의 의견 중에는 음성 녹음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음성이 있으면 사고 발생 시 사건의 전후 사정에 대해 알 수 있어 오해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음성 녹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음기능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는 녹음기능 사용금지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표 VI-1-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자체 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학계/유관기관	• 사각지대 최소화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원장	• 2015년 12월에 의무 설치된 기기는 사용 기한의 초과로 문제가 나타나 모뎀과 모니터 등 교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
보육교사	• 녹음기능이 가능하도록 변경
학부모	• 화질뿐 아니라 카메라 렌즈의 구경 및 화각에 대한 기준 필요(카메라 렌즈의 화각이 넓은 카메라 제시)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3) 설치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에 대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에서는 조리실도 아동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설치구역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할 수도 있다고 명시된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어린이집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한 지역’이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라고 밝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학부모 집단에서도 영유아의 이동이 잦은 곳인 복도, 계단, 신발장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획된 공간의 크기에 따른 설치 대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모두 현재 설치구역 지침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서는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별도로 구획된 공간인 식당, 별도로 구획된 공간인 강당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의 의견 중에는 가이드라인의 ‘감시범위’라는 용어가 ‘촬영범위’로 순화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표 VI-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아동의 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구역에 조리실(조리시간 외 (조리원 비근무시간)에 아동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추가 필요
학계/유관기관	• 추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된 구역은 보안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설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 • 설치구역에 복도와 계단, 현관이 추가돼야 하며, 설치구역 추가 시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 • 용어 순화 필요: ‘감시범위’ 대신 ‘촬영범위’로 수정
학부모	• 복도, 계단, 신발장 등에도 설치가 필요 •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획된 공간의 크기에 따른 설치 대수 기준 필요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4) 안내판 설치

안내판의 설치와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과 어린이집 원장 집단은 현재 가이드라인 내용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에서는 건물 이 두 개 이상일 때는 각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현장 점검에서 어린이집 실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너무 작은 규모로 안내판을 제작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의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모 집단에서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VI-1-4〉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어린이집 출입구에서 어린이집 출입구(건물이 두 개 이상일 때 각각의 출입구에 설치)로 수정 필요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안내판 기재사항에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 업체명 및 연락처’ 추가 필요 • ‘안내판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제작 설치할 수 있음’ 문구 삭제요청; 어린이집 실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규모로 제작한 사례 발생
학부모	•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이 잘 눈에 띄지 않음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나. CCTV 설치·운영의 예외

1) 동의 및 불이익 금지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CCTV 미설치·미운영 관련 보호자 전원의 동의보다는 2/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 집단에서도 미설치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전원 동의가 아닌 과반 동의로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지역 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내 어린이집 공급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VI-1-5〉 CCTV 미설치 동의 및 불이익 금지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전원의 동의보다는 보호자 2/3 이상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 미설치·미운영 관련 서식 참조 안내 추가 필요
원장	- 설치·운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원이 아닌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법 제안 - 학부모와 동일하게 운영자의 결정 권한도 존중받아야 하기에 학부모의 동의는 전원이 아닌 과반으로 정하는 것이 공정한 지침이라고 봄
학부모	- 해당 지역 내 어린이집 공급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지역 내에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 동의시기 및 동의절차

미설치·미운영 관련 동의시기 및 동의절차와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에서는 기준일 다음에 입소한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기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기 결정사항을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동의시기와 동의절차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원장 집단에서는 미설치의 동의시기 내용에서 설치를 잘못 언급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표 VI-1-6〉 CCTV 미설치 동의시기 및 동의절차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기준일 다음에 입소한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기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반드시 기 결정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으로 수정
학계/유관기관	• 동의시기와 동의절차를 1개로 통합하여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원장	• ‘최초 설치 시에는 최초 설치 의사결정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이란 문구에서 설치를 모두 미설치로 수정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3) 신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에서는 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 시 3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준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과 어린이집 원장 집단에서는 신고에 관한 내용 서술이 좀 더 명확하게 기재되기를 원했다.

〈표 VI-1-7〉 CCTV 미설치 신고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 또는 미운영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서면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학계/유관기관	• 내용 서술 수정 필요
원장	• 명확한 설명으로 수정 필요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1) 동의 및 불이익 금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관련 내용이 ‘CCTV 설치·운영의 예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에서도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를 CCTV 설치·운영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CCTV의 설치·운영의 예외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CCTV

와 관련된 요구를 이 영역에 적는 사례들이 있었다. 보육현장에서의 이해와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어린이집 원장 집단과 보육교사 집단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VI-1-8〉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동의 및 불이의 금지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내용은 ‘CCTV 설치·운영의 예외’에 포함하였으면 함
원장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영유아를 보육할 때 부담감, 오해의 소지 등이 있으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네트워크 카메라를 없애야 함. 과거 IPTV로 부모들에게 전송하던 시기에 계속되는 부모들의 전화로 보육을 할 수 없었음 •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개인정보의 법적 권한이 있으므로 네트워크 카메라는 절대 반대
보육교사	•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에 CCTV보다 훨씬 사생활 침해에 치명적인 장치이므로 설치하지 않아야 함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 동의시기 및 동의절차

네트워크 카메라의 미설치 동의시기 및 동의절차와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에서는 기준일 다음에 입소한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동의 여부는 기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기 결정사항을 해당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동의시기와 동의절차의 내용 구성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준일 이후 입소 또는 채용된 동의권자의 동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학계/유관기관 관계자는 접근 권한이 있는 다수가 수시로 열람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접근 권한에 대한 주의나 금지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정보의 접근 방식은 접속정보만 알면 외부에서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어린이집 원장 집단과 보육교사 집단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표명하였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보고 및 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보육교사 집단에서는 올해 코로나19로 동의 기간이 한 달 연장된 경우를 언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동의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표 VI-1-9〉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동의시기 및 동의절차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기준일 이후에 입소 또는 채용된 동의권자의 동의 여부는 기 결정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반드시 기결정사항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함.
학계/ 유관기관	• 내용 구성의 재조직 필요 • 기준일 이후 입소 또는 채용된 동의권자의 동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접근 권한이 있는 다수가 수시로 열람 가능하므로, 접근 권한 관련 하여 주의 내지는 금지 사항(아이디/비밀번호 공유 금지, 퇴소 시 이용 권한 삭제, 네트워크 카메라 접근 정보의 무단 복사, 캡처, 유출 등 금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원장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반대
보육교사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반대 •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동의 기간을 1개월 연장(4월 30일까지)한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 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동의 기간이 늘어나야 할 것 같음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가. 책임자 등 지정

책임자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영담당자가 보육교사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가 원장일 경우 역할 지시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은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현장에서 인권 침해의 논란을 제기하므로 별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두는 것보다는 관리책임자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책임자로 영상정보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안전성 확보 조치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의 구성을 변경하여 관련 내용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학부모 집단에서는 관리책임자의 정/부를 정 해서 ‘정’이 부재할 때 ‘부’가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VI-2-1〉 책임자 등 지정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운영담당자가 보육교사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가 원장일 경우 역할 지시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별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두는 문구보다는 관리책임자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학계/ 유관기관	• 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로 영상정보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내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학부모	• 관리책임자 정/부를 정해서 책임자 ‘정’이 부재 시에도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나. 내부 관리계획

내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에서는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각 호의 사항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는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하다 보면 관리책임자명에 성명이 아닌 보육교직원 등의 특정할 수 없는 대상으로 담당자를 기재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성명을 적도록 하여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과 원장 집단에서는 내부 관리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회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학기 부모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설명회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내부 관리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 예시에 담당자의 성명 기재와 같은 내용 보완이 필요하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도 필요해 보인다.

〈표 VI-2-2〉 내부 관리계획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의 문장은 해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기재 필요
학계/ 유관기관	• 홈페이지 게시분 아니라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회(신학기 오리엔테이션 등)를 활용하여 공지 •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게시 방법 제시 필요

구분	내용
원장	• 내부 관리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 외에 사전 동의서에 명시하고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수정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 안전성 확보 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와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성 확보와 보안에 취약하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유의사항,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소프트웨어 등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1차 네트워크에서 수신자를 제한하더라도 전송 이후에는 해당 수신자에 대한 통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례조사에서도 학부모가 컴퓨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서는 전문가 초청 학부모 설명회를 실시하여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철저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VI-2-3〉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CCTV와 달리,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영상정보 관리상 안전성/보안 조치에 취약한 점이 많기에, 이에 관하여 별도의 유의사항,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소프트웨어 등 관리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함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라. 설치·운영 점검 등

설치·운영 점검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이란 표현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월 1회 이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점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점검 기록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상황을 기록하고 처리담당자에게 서명을 받아 별도 보관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장 집단에서는 기계적인 고장으로 녹화가 되지 않거나 저장된 영상이 일부 손실된 경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처리담당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고장 시 부품교체 시기 동안 임시저장을 위한 별도의 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부모 집단도 기기의 이상이 발견되면 알람장

등을 활용하여 이상 상황 및 조치계획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VI-2-4〉 설치·운영 점검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주기적으로 점검은 해석의 모호성이 있어 월 1회 이상으로 점검 변경 필요
학계/유관기관	• 점검사항을 제시해주면 좋겠음 •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애매한 표현임 •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남긴다 등의 정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점검 기록에 이상이 발견되면 상황을 기록하고, 처리자에게 사인을 받아둘 필요도 있음 • 주기적 점검 또는 사고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 관련 구체화 필요
원장	•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로 매월 초 CCTV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점검 주기를 월 1회 하는 것으로 명시 필요 • CCTV의 기계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녹화가 되지 않거나 저장된 영상이 일부 손실되었을 경우(의도적으로 영상을 손상시키지 않았을 경우) 책임자는 운영위원에게 즉시 안내하고 CCTV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따라 기사 방문 후 부품교체 시기가 3~4일 소요되기도 하기에 교체 시기 동안 임시저장을 위한 별도 지침이 요구됨
보육교사	• 주기적 점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학부모	•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여 보완 필요 •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알림장’ 등을 활용해 학부모들에게 공지 필요(이상 상황 및 조치 계획)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3.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가. 열람 요청

열람 요청에 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집단과 보육교사 집단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원장 집단에서는 열람 요청을 받았던 경험담을 토대로 무분별한 열람 요청이 지양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 원장의 의견 중 가이드라인의 지침은 적절하지만 무분별한 열람 요청에 대한 운영자의 권한이 무시되는 보육현장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동학대 및 중대한 상해로 정당한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기타 과도한 열람 요청에 대해서는 열람 전에 중재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부모가 과도한 열람을 요구했을 때 관계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관계자가 함께 현장 열람 전에 사안의 경중을 결정하

는 보건복지부 소속 중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원장 집단과 보육교사 집단에서는 학부모가 사소한 일(분리불안, 친구 간 다툼, 작은 안전사고 등)로 열람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표 VI-3-1〉 열람 요청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원장	• 한 학부모가 아이 얼굴에 난 상처 경위가 알고 싶다며 경찰을 대동해서 CCTV를 열람하겠다고 해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절차에 따라 열람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운운하며 아동학대범으로 모는 것 같아 상처가 되었음 • 이 지침은 적절하지만, 무분별한 열람 요구에 대한 운영자의 권한이 묵살되고 있는 현장의 상황과는 매우 상이함. • 아동학대 및 중대한 상해로 인한 정당한 열람 요구가 아닌 기타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열람 전에 중재역할 기구를 통한 합리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함(학부모의 과도한 열람 요구 시 경찰서, 지자체 공무원, 육종지 등 관계자가 함께 현장 열람 전에 사안의 경중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중재기구 마련이 요구됨) • 법에선 열람 과정에 대해 명시를 해놓았지만 열람을 요청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는 요청과 동시에 보기를 원하므로 이용자에게 대한 학부모 대상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보육교사	• 10일 이내가 주말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기술 • 부모들이 사소한 일들(예: 분리불안, 친구 간 다툼, 작은 안전사고 등)로 열람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정말 특별한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나. 열람

열람과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사안에 따라 최소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판단하는 등의 중재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장치 방식에 대한 설명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집단과 보육교사 집단에서도 열람 요청이 있을 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입된 시기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에서 자동 모자이크(마스킹)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한 언론사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관련 기술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제품 없이 개발 중인 단계이기에 법 시행일(15.9.19.)에 맞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보도해명자료, 2015. 10. 12.).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관련 제품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으며 많은 어린이집이 이를 사용하고 있기에

모자이크(마스킹)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원장 집단과 보육교사 집단은 가이드라인 열람 지침을 실제 열람 진행 과정에서 따르기가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무분별한 열람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무혐의일 경우 열람 요청자에게 어린이집 퇴소와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비용청구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육교사 집단에서도 열람 절차를 무시하고 열람하겠다는 학부모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예외 상황 없이’ 열람절차에 따라 열람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VI-3-2〉 열람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열람에서 사안에 따라 최소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판단하게 한다든지 식의 중재장치를 가이드라인 안에 포함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가이드라인에 담아줄 필요가 있음
원장	• 처음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정해진 열람 기간만 열람할 수 있어야 함(예를 들면 아동학대 등을 발견한 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동학대를 전제로 열람을 요구하고 있고 보호자가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경찰관 동행, 즉시 열람하는 사례가 많음 • 열람 요청 시 가이드라인 매뉴얼대로 대응하면 맘카페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 제기하여 어린이집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보호자들이 압력을 행사할 뿐더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보호자가 다른 아동의 보호자한테 아동학대 의심된다며 의견 전달하여 열람 요청과 확인이 들어가고 있음 •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무색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해당 보육교사의 지위가 보장되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함 • 무분별한 열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무혐의일 경우 열람 요청자에게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비용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으면 좋겠음 • 열람 후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오해의 상황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 부담, 교직원 및 다른 학부모에게 공개 사과 등의 책임 있는 추후 조치가 동반되어 무분별한 영상 열람이 자제되어야 함 • 보육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열람 가능 시기를 열람 시작 후 '20일'에서 (예: 7일 이내 등으로) 단축이 필요함 • 열람 상황에 대해 적절한 규정이 있지만 막무가내식 열람 요청자들을 만나면 시설은 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아동학대가 아닐 시 해당 아동의 퇴소 및 어린이집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 및 가이드라인에 명문화 필요
보육교사	• 절차를 밟지 않고 무턱대고 들이닥치는 학부모들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예외 상황 없이’ 열람 절차를 밟고 열람을 하거나, 경찰서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열람을 할 경우 모니터에 녹화된 다른 아이들은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며 모자이크할 경우 즉시 열람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열람 일정을 조정해야 함(업체에서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음)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 열람 거부

열람 거부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은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어 어린이집운영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가이드라인 열람 거부 사유에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열람 거부를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 가이드라인의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수정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집단에서는 열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열람 요청을 하는 학부모 사례가 다반사라고 토로하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린이집에서의 무분별한 CCTV 열람 요청이 자제될 수 있게 임신육아종합포털 등의 사이트를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원장 집단과 보육교사 집단에서는 무분별한 학부모의 열람 요청을 근절하기 위해 열람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반면 학부모 집단에서는 현재 가이드라인의 거부 사유는 어린이집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열람 거부 사유를 명백한 항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표 VI-3-3〉 열람 거부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열람 거부 결정에서 운영위원장이 제반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가 불확실 • 운영위원장 1인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함께 검토 필요 • 열람 거부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의 단독 결정에 따른 판단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결정한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원장	• 열람 거부에 따른 보호자의 반사회적 행동은 맘카페에 해당 어린이집 관련 글 게시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민원 제기로 이어지므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열람을 요구하면 절대적 약자임 •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임신육아종합포털 등의 사이트를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무분별한 CCTV 열람 요청을 자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안내가 필요함 • 열람 요청자가 운영위원장일 경우 당사자인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학부모 운영위원들 또는 보육교직원 전체의 동의 기준으로 '열람의 거부'에 대한 추가 지침 필요 • 영상정보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시 필요
보육교사	• 열람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필요
학부모	• 현재 거부 사유는 어린이집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열람의 거부 시 사유를 명백한 항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라.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 집단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정기 지도점검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연장보육 실시 여부,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급식제공 현황 등을 위한 열람 요청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장 집단 의견 중에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위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영상 녹화 자료를 검색하여 이를 적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내용도 있었다. 보육교사 집단에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사안이 진행될 경우 확인서류 작업과 함께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없으면 신고한 학부모에게도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하고 문서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VI-3-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원장	• 관계 공무원이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정기 지도점검에서(민원 미발생인 경우) 영유아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연장교사의 근무상황, 급식제공현황 등을 위한 열람 확인은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함 • 어린이집에서 위반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CCTV 녹화분을 검색하여 이를 적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침해임
보육교사	• 경찰서에서는 사건 진술과 학부모의 CCTV 열람 전 확인서류 작업을 해주시고, 의심사항이 포착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도 불이익(예시: 어린이집 퇴소, 정성 어린 사과, 어린이집에 서의 무고 민원 등)이 있음을 안내하고 서류를 남겨놔야 함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마.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과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로 현장출동을 할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는 안전업무 수행기관이 열람했을 때 해당 지자체로 보고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표 VI-3-5〉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등 개정(‘20.10.시행 예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한 조사 진행

구분	내용
	예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은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파트로 이동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수정 필요 • 열람의 오남용 방지 및 행정처분 연계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 차원으로 안전업무 수행기관의 열람 시 해당 지자체로 보고(통보)하는 절차 필요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바. 영상정보 제공 등 제한

영상정보 제공의 제한과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 제18조 제2항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원장 집단에서도 보육현장에서 열람 시 학부모의 휴대폰 촬영으로 영상정보가 유출하는 사례가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강조가 가이드라인에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VI-3-6〉 영상정보 제공의 제한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범위를 명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대한 사항 명시
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열람 시 학부모님들의 핸드폰 촬영으로 맘카페들로 유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4.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가. 영상정보 수집 제한

영상정보 수집의 제한과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은 현재 가이드라인 내용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은 영상정보 수집의 제한을 여기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보면 CCTV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VI-4-1〉 영상정보 수집 제한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영상정보 수집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 필요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나. 영상정보 저장

영상정보의 저장과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야간보육이나 휴일 보육을 운영하는 경우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필요에 따라 야간 휴일 등에도 녹화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필수로’ 녹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사항이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와 학부모의 의견 중 열람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저장기간 초과로 자동 삭제되는 영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열람 요청이나 사고 등 추가 보존 사유 발생 시 관리책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에서도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상이한 견해를 가졌다. 원장은 보관기간의 축소를 원했고 학부모는 보관기간의 증가를 요구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60일 이상이다.

〈표 VI-4-2〉 영상정보 저장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야간보육이나 휴일 보육을 운영하는 경우 녹화 필요 - 열람 요청이 있거나 사고 등 추가 보존 사유 발생에 따른 영상정보 저장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추가 필요
원장	60일 녹화 용량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를 바람 - 기간을 한 달 30일로 축소
학부모	- 열람 요청 절차를 수행하는 중 삭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된 열람 요청 영상을 따로 저장 보관한다는 등의 개선 필요 90일 이상의 저장 용량(최소 한 분기 단위)으로 수정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 영상정보 삭제

영상정보의 삭제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현재 가이드라인 내용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원장 집단에서는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인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과태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집행되는 사안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서는 50만원, 2차 위반에서는 100만원, 3차 위반에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표 VI-4-3〉 영상정보 삭제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원장	- 영상정보 보존기간 위반 과태료 부과는 개선이 필요함 - 기계의 노후로 인한 60일 미만 일 경우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과하다 여겨짐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라. 열람 등 기록 관리

열람 등 기록 관리에 대해서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 제1항을 보면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영상정보 열람대장에는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추가사항으로 ‘영상정보 열람 요구자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 사유’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항으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해당한다. 특정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기에 이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원장 집단에서는 관리대장의 3년 보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규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 제2항에서는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열람대장과 관련된 내용이 관리대장으로 명명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표 VI-4-4〉 열람 등 기록 관리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사본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 수사기관 수사의뢰)에 대한 추가 안내 필요
원장	• 관리대장의 3년 보관에 대한 완화 필요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5. 보칙

가. 사무 위탁

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위탁 시 위탁자의 의무사항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예시로는 개인정보가 유출, 도난, 변조, 훼손이 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원장 집단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탁 업무의 모든 책임이 원장에게 부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a: 19)과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b: 17)을 보면 “위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위탁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만이 기술되어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과 제5항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VI-5-1〉 사무 위탁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업무 위탁 시 위탁자의 의무사항 추가 필요
원장	•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명시 필요 • 첫 번째 항목의 ‘채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음’과 두 번째 항목의 ‘이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문구를 명문화하여 문제의 모든 책임을 어린이집 원장이 갖도록 하고 있음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나.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안내하여 영상정보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원장 집단에서도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영상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육교사 집단도 영상정보를 확인한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에게 관련 영상의 내용을 전달하는 일들이 발생하기에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견을 개진한 집단은 공통되게 가이드라인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 VI-5-2〉 비밀유지의무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비밀유지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의 내용 명시 필요 • 영상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 안내 하고 영상정보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민감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
원장	•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책임도 같이 명시 •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맘카페 등에 올리는 사례가 많음으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보육교사	• 영상 확인을 하는 학부모에게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조금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함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6. 소결

본 장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로 구분하여 전문가 집단별 개선 요구를 분석하였다. 2015년에 제작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의 영역별 주요 개선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쟁점이 된 사항은 설치구역과 CCTV 설치·운영 예외였다. 설치구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현재의 지침 규정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학부모,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추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는 구역인 출입로, 계단,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한 지역도 필수 설치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설치구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으로 필수 설치구역을 추가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CCTV 설치·운영 예외에서 CCTV 미설치·미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집단은 운영자의 결정 권한도 존중받아야 하므로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아닌 과반의 동의가 공정한 지침이라고 제안한 반면 학부모 집단에서는 지역 내 어린이집의 공급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집단은 현재의 지침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네트워크 카메라가 CCTV보다 사생활 침해에 치명적이므로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은 설치·운영 점검이었다.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이란 표현의 모호성을 지적하였다. 보육현장에서도 월 1회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설치·운영 점검은 월 1회 이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열람 및 제공 영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열람 요청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열람 거부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사소한 일로 열람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학부모 집단은 현재 거부 사유가 어린이집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열람 거부 사유를 명백한 항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열람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어린이집 원장/교사 집단은 과도한 열람 요청을 차단하면서 열람 거부 시 해당 학부모의 오해를 사지 않고자 열람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길 원했다면 학부모 집단은 어린이집이 함부로 열람 거부를 하지 못하게 열람 거부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길 원했다.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영상정보 저장이었다. 어린이집 원장 집단은 60일 녹화 용량의 부담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장 기간이 30일 정도로 축소되길 원한 반면 학부모 집단은 저장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에서도 열람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학부모 사례가 있다면서 비밀유지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은 열람 전 열람 요청자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V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01 개선방향

02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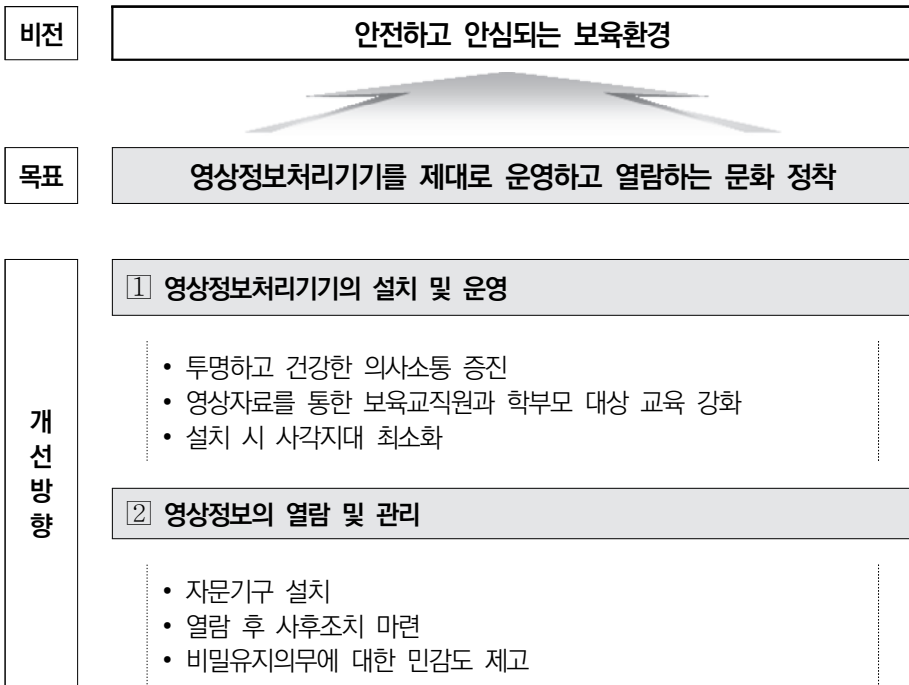
V.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사례를 파악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사례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요구를 토대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개선방향과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 영역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개선방향

어린이집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육환경이다.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안심되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필요하다. 사례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어린이집과 관계된 행정가,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강조하였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이래 보육환경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례조사에서 만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불편하지만 자신을 보호해 줄 장치로 여겼고, 학부모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장치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대로 운영하고 열람하는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이드라인의 개선방향도 이를 목표로 하였다. 본 절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대로 운영하고 열람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례조사와 전문가 조사의 의견을 토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과 ‘영상정보의 열람 및 관리’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림 V-1-1] 개선방향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1) 투명하고 건강한 의사소통 증진

사례조사 심층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가 가장 많이 강조한 말은 ‘소통’과 ‘신뢰’였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과 신뢰는 투명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투명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심층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학부모가 영상정보처리기기보다 자신의 말을 더 신뢰하길 원했고 학부모는 어린이집 사안이 투명하게 공개될수록, 자신의 자녀에 대해 교사가 자세한 설명을 할수록 어린이집을 신뢰하였다. 학부모에게 보육활동이 열려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학부모가 많아지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가 그저 설치된 기기에 불과하였다. 이는 사람 간 신뢰가 결국은 기기나 어떤 장치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가 불신하는 보육환경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은 ‘무엇이 영유아를 위해 바람직한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영상에 비쳐서는 안 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보육환경이 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투명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영상자료를 통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교육 강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을 뿐더러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부 관리계획에 관해서도 관심이 적었다. 어린이집 원장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기기를 설치한 업체나 임차한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의 차이부터 기기별 운영 및 정보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는 CCTV를 운영하는 경우, CCTV를 미설치한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를 운영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를 운영하다 CCTV 기능으로 변경한 경우, CCTV를 운영하다 네트워크 카메라로 기기를 변경하여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경우 등 각 경우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가 대상인 교육자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반적 사항부터 영상정보 열람에 관한 안내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심층면담에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는 문서보다는 짧은 영상자료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한 어린이집에서는 신학기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연계 부모교육 동영상(4분 42초 분량)’을 활용하고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 영상이 CCTV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고 밝혔다. 보육현장에서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만든 영상자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 설치 시 사각지대 최소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은 영유아의 안전 및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린이집의 투명성과도 연관되는 사항이다. 심층면담에서 학부모들은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교사와 아이들이 생활하는 장소에 사각지대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대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설치 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나. 영상정보의 열람 및 관리

1) 자문기구 설치

사례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는 자문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콜센터 방식으로 열람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례조사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난감한 열람 요청 건에 대해 민간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열람 요청을 받은 보육교사는 물어볼 곳이 없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내해야 했다. 학부모도 열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있으나 교사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보육현장에서는 자문기관이 열람 요청과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별 대응방법을 체계화하면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원했다. 학부모의 열람권과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자문기구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열람 관련 사안이 있을 때 우선하여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 열람 요청에서 즉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동행자에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포함되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자체마다 설치된 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13조에 명시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

아 학대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거점형·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게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33). 시·군·구 단위별 확장과 기능을 고려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심층면담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관련 중재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중재기구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보육현장에서 온전히 작동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문기구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필요가 있다. 자문기구에서 각각의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형성된다면 자문기구의 역할은 중재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열람 후 사후조치 마련

사례조사와 전문가 조사 및 회의에서 보육교직원은 열람 후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첫째는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신고한 학부모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몇 개월간 고통을 당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보육교직원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열람과 '아니면 말고' 식의 열람 후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어린이집 퇴소 규정에 관련 사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의 퇴소 규정을 보면,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하였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퇴소를 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 75). 이 규정 중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하였을 경우’를 ‘학부모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V-1-2]와 같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어린이집 교직원을 위한 감정노동 응대 매뉴얼’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 유형으로 욕설, 폭언, 협박 및 위협, 성희롱, 모욕, 누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V-1-2]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 예시

II

어린이집 교사의 감정노동

1 우리 어린이집의 감정노동을 파악해 보세요.

A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 예시 (폭행, 폭언, 협박 및 위협, 성희롱, 모욕, 누명 등)	- 욕설, 폭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친 상황에 대해 교사의 책임 소홀과 부주의에 욕설을 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전화와 문자로 끊임없이 폭언함 - 협박 및 위협: 언론 및 관할기관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함 - 성희롱: 외모 및 몸매 등을 비하하며 성적으로 희롱함
B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형 예시 (업무방해, 억지 주장, 과도한 요구 등)	- 업무방해: 등원시간에 자신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만 하며 다른 원아들의 등원 지도 업무를 방해함 - 억지주장: 어린이집에서 공유되는 아이의 사진이 적다며 교사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고 주장함 - 과도한 요구: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어린이집에서 원장 및 교사가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ccc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61114>)에서 2020. 7. 15. 인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열람 후 사후조치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안의 대처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의 제공이다. 학부모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보육교직원에게는 교육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알 권리와 보육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되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그 권리가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받고 영상정보를 열람했으나 학대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함께 대응하고 경험했던 어린이집 원장과 동료 교사 모두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육환경은 보육교직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무혐의 처리된 아동학대 신고 건이 있었던 어린이집 보육교

직원을 위한 특별 방문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종결된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특별 방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민감도 제고

전문가 조사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안내하여 영상정보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례조사와 전문가 회의에서도 보육교직원들은 열람 후 학부모의 비밀유지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밀유지의무 서약서가 없다 보니 보육현장에서 열람을 진행할 때도 열람 신청서만 작성하는 곳이 많다고 하였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대로 운영하고 열람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열람 요청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서식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본 절에서는 2015년 제작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의 수정사항과 추가사항을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안)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 사전 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 의견 수렴 방법에서는 방법의 다양성을 위해 ‘학부모 총회의 개최’는 그대로 두되 학부모 총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학부모 총회는 재원아동 부모 90% 이상 참석을 기준으로 하였다. 영상정보처리기

기의 설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영향을 받는 대상의 범위를 ‘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였다. 설명회 예시에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설명회 방법인 ‘신학기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표 V-2-1〉 사전 의견 수렴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사전 의견 수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학부모 총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개최 -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등의 실시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학부모 총회(재원아동 부모 90% 이상 참석) 개최 - 운영위원회 개최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보육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신학기 부모 오리엔테이션 등), 설문조사 등 실시

2) 정보주체의 동의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열람 등 어린이집의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부분을 추가하였다.

〈표 V-2-2〉 정보주체의 동의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정보주체 동의	• 해당사항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열람절차 등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안내한 후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의 서면동의(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함 •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서면동의(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항 • 영유아의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명회(신학기 부모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목적 및 내부 관리계획을 충분히 설명한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에서의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표 V-2-3>과 같다. 카메라의 화질 등급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이기에 기존 방식과 예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CCTV의 최장 수명이 5년 정도라는 것과 기술의 발전으로 고화소에 대한 기준이 변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개선(안)에서는 이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추가하였다.

성능 기준 등에 관한 설명에서 관련 법령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할 수 있으나 임차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표 V-2-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성능기준	• 카메라는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는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함 〈참고사항〉 - CCTV의 최장수명이 5년 정도임을 고려하여 기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음 - 기기를 교체할 경우 교체 시점 기준 교환소 CCTV로 교체해야 함

4) 설치구역

설치구역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추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는 구역인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주/부출입문), 어린이집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지역 및 중요실’이 필수 설치구역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설치구역은 법적 규정이 있는 사항으로 위에 제시된 구역이 필수 설치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은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설치구역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 중 ‘감시범위’라는 용어는 ‘촬영범위’로 수정하였다.

〈표 V-2-4〉 설치구역 관련 수정사항 신구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설치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촬영범위가 축소되었는지를 확인함

5) 안내판 설치

안내판 설치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어린이집의 실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매우 작은 크기로 안내판을 제작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

하여 가이드라인 개선(안)에서는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음’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안내판 기재사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였다. 안내판 설치 장소 중 어린이집 출입구는 건물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하였다.

〈표 V-2-5〉 안내판 설치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안내판 설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함 - 다만, 안내판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음 •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자·책임자·연락처 • 어린이집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고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어린이집 출입구 - 어린이집 주변 경계부(담장)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별지 제17호 서식)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함 (삭제) •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자·책임자·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어린이집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고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어린이집 출입구(건물이 두 개 이상일 때는 각 출입구에 설치) - 어린이집 주변 경계부(담장)

나. CCTV 설치·운영의 예외

2015년에 제작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은 ‘CCTV 설치·운영의 예외’와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를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를 CCTV 설치·운영의 예외로 규

정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현재 가이드라인의 구분은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 개선(안)에서는 관련 영역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 형식은 〈표 V-2-6〉과 같으며, 수정한 전체 내용은 〈부록 3〉 ‘CCTV 설치·운영의 예외’ 영역에 제시하였다.

〈표 V-2-6〉 CCTV 설치·운영의 예외 구성 형식 신구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CCTV 설치· 운영 예외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의 예외 1. 동의 및 불이익 금지 2. 동의시기 3. 동의절차 4. 신고 •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1. 동의 및 불이익 금지 2. 동의시기 3. 동의절차 4. 보고 및 운영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의 예외 1.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가이드라인은 ‘책임자 등의 지정’, ‘내부 관리계획’, ‘안전성 확보 조치’, ‘지능형 감지시스템’, ‘설치·운영 점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개선(안)에서는 각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시 순서를 수정하였으며, 지능형 감지시스템의 경우 법적 규정사항이 아닐뿐더러 보육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 아니기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1) 책임자 등 지정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책임관 등의 지정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지켜야 함’이란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다음 항목에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내용을 배치하여 항목 간 연계성을 높였다. 책임관 지정과 관련하여 보육현장에서 오용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사례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회의 때 나온 내용에 따르면 보육현장에서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등 기기에 대한 이해가 높

지 않으며 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권유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하여 원장만이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실시간 접속이 가능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운영하지 않는 것이기에 원장도 외부에서의 영상정보 열람이 금지된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 대상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개선(안)에서는 ‘자료’, ‘영상자료’ 등의 용어를 ‘영상정보’로 수정하였다.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에서는 법령이 잘못 기재되어 그 부분을 수정하였다.

〈표 V-2-7〉 책임관 등 지정 및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수정사항 신구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책임관 등 지정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책임자로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외부에서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금지되는 행위임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책임자로 영상정보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지켜야 함 (삭제)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1항 제4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영상정보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제4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영상정보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함

2) 내부 관리계획

내부 관리계획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토대로 수정하였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잘못 기재된 법령도 있어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내부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되어 있다. 어린이집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이럴 경우 설명회(신학기 부모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미리 받은 서면동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표 V-2-8〉 내부 관리계획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내부 관리계획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시행규칙 제9조의3 제4항에 따른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되는 장소 -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최소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자동 삭제 가능 • 어린이집의 원장은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처럼 작성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성명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최소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자동 삭제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설명회(신학기 부모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미리 받은 서면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3) 설치·운영 점검 등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보육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이상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로 이상 상황과 조치계획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처리담당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도의 문서로 보관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명시하였다.

〈표 V-2-9〉 설치·점검 등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설치·점검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월 1회 이상 점검(별지 제18호 서식)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이상 상황과 조치계획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처리담당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도의 문서로 보관해야 함

라.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1) 열람 요청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10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표 V-2-10〉 열람 요청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열람 요청	• 어린이집 원장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단, 즉시 열람케 하는 등 보호자 등과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단, 즉시 열람 등 보호자 등과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일의 날짜는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함

2) 열람

열람 부분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의 제안을 반영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마스킹) 처리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입될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다.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이 수월하기에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이를 명시하였다. 열람 요청과 관련된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노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가 열람에 입회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하였다.

〈표 V-2-11〉 열람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열람	•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필요 시 다른 사람은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마스킹)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함 -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노출된 경우 관리책임자는 열람에 입회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받아야 함

3) 열람 거부

열람 거부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수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서 명시된 내용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표 V-2-12〉 열람 거부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열람 거부	•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서면(별지 제9호 서식)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관계 공무원 및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기에 그 내용을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반영하였다.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표 V-2-13〉 관계 공무원 및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관계 공무원 열람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의 요청은 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보육담당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안전업무 수행 이외의 열람요청은 제한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의 요청은 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 수행 - 보육담당 관계공무원: 안전업무 수행 이외의 열람요청은 제한됨
안전업무 수행 기관 열람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4 제4항에 따른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4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른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 영상정보 수집 제한

영상정보 수집의 제한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개선(안)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가이드라인 개선(안)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의 제안을 반영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내용도 추가 제시하였으며, 감청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였다.

〈표 V-2-14〉 영상정보 수집 제한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여서도 아니 됨 *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됨(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2) 영상정보 저장과 삭제

현재 가이드라인은 필요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 등에 녹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서는 야간보육이나 휴일보육에도 녹화를 해야 하기에 가이드라인 개선(안)에서는 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였다. 가이드라인 개선(안)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의 추가 보존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추가 보존한 영상정보의 삭제는 추가 보존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표 V-2-15〉 영상정보 저장과 삭제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영상정보 저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 시간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야간 휴일 등에도 녹화할 수 있음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시간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보육이나 휴일보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녹화해야 함 - 열람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관련 내용을 영상정보 추가 보존 관리대장(별지 제 15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영상정보 삭제	해당사항 없음	추가 보존한 영상은 추가 보존 사유 해소 시 즉시 삭제해야 함

3) 열람 등 기록 관리

열람 등 기록의 관리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도록 수정하였다. 영상정보 사본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내용도 추가하였다.

〈표 V-2-16〉 열람 등 기록 관리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열람 등 기록의 관리	•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영상정보 열람 요구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열람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 영상정보 열람 요구자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 사유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4호 서식의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 사유 ※ 영상정보 사본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바. 보칙

1) 사무 위탁

사무 위탁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탁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수정하였다. 가이드라인 개선(안)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한다는 것과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V-2-17〉 사무 위탁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려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함 -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2)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에서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보호자가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안내하여 영상정보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와 제6호의 규정을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추가하였다.

〈표 V-2-18〉 비밀유지의무 관련 수정사항 신규비교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비밀 유지 의무	- 영상자료를 열람한 보호자 등은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해당사항 없음	- 영상정보를 열람한 보호자 등은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영상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보호자는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별지 제 10호 서식)를 작성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서식

가이드라인 개선(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기존의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와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를 개별 서명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에는 ‘열람절차’를 도식화하여 열람 요청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은 구분이 ‘이용, 제공, 열람, 파기’로 되어있는데 보육현장에서는 각 구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었다. 열람과 삭제·파기 관리대장은 별도로 두고 기존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이용과 제공을 위한 것으로 수정하였다. 보육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방법도 추가하였다.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추가된 서식으로는 ‘개인영상정보 취득 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영상정보 열람대장’, ‘영상정보 추가 보존 관리대장’,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진·이정림·조혜주(2015).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9). 국정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권건보(2011).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세계헌법연구, 17(3), 79-105.
- 권정윤·송나리(2018). 어린이집 CCTV 의무화로 인한 유아 문제행동 지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유아교육연구, 38(2), 233-259.
- 권정윤·조혜영(2017).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CCTV 필요성 인식과 역할수행, 어린이집 조직건강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37(6), 143-164.
- 김경인·구은미(2019). 보육교사의 CCTV인식이 영유아권리존중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동과 권리, 23(2), 235-252.
- 김미정·김구슬(2016). 경기도 어린이집 CCTV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성원·이지영(2020). 보육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CCTV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1), 805-820.
- 김영희·김두정(2018). CCTV 의무화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일반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2), 311-317.
- 김정수(2019).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마994 결정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62, 255-290.
- 김종훈(2017). Foucault의 파놉티콘 개념에서 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사상연구, 31(4), 47-64.
- 김진숙·김미영·이봉선(2016).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보육교사·부모의 인식 비교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6), 155-168.
- 김태동(2017). CCTV운영과 보육교직원 권리 충돌에 대한 이익형량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8(1), 3-24.
- 김태동·이서영(2017).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02, 143-162.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내부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년도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내부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서보순·구은미·강인자(2016).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직무만족도가 어린이집의 CCTV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5(2), 71-93.

유경숙(2018). CCTV에 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인권감수성 및 아동인권인식과의 관계. 아동교육, 27(2), 127-144.

유해미·강은진·권미경·박진아·김동훈·김근진·김태우·이유진·이민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윤주연·장경은·박지현(2020).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보육교사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2), 1-24.

이관후·조희정(2015).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3(2), 83-118.

이서연·홍순옥·정은주(2017).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사권리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적 인식. 아동과 권리, 21(1), 41-59.

이연승·이유진(2018).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인식. 어린이미디어연구, 17(4), 207-229.

이영아·이대균(2017).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과 바람.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1), 181-211.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운진·윤지연(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임수정·이일랑·이대균(2013). CCTV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 이야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3), 433-453.

정순원(2017).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헌법적 재고찰. 교육법학연구, 29(3), 45-72.

차선희·이진숙(2016). 영유아 교육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 교사의 경험. 비판 사회정책, 51, 292-325.

행정자치부(2015a).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2015b).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33호]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아동복지법」[법률 제16737호]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20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7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4호]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보도·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5. 1. 14.).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 16.). 앞으로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 27.).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5. 4. 30.).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5. 6. 1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도해명자료(2015. 10. 12.). [10월 8일자 MBC] ‘저화질·사생활 침해 논란에, 어린이집 CCTV 무용지물’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기사】

연합뉴스(2015. 4. 30.). 10년만에 국회 문턱 넘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https://www.yna.co.kr/view/AKR20150430180000017?input=1195m>
에서 2020. 6. 2. 인출.

【참고 사이트】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http://edpolicy.kedi.re.kr/frt/boardList.do?strCurMenuId=54>에서 2020. 6. 9. 인출.

- 1) 강호원(2015. 2. 25.). 영국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0056&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87&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 2) 김지영(2015. 2. 25.). 일본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0060&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91&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 3) 남궁옥(2015. 2. 25.). 핀란드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0059&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90&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 4) 이세웅(2015. 2. 25.). 미국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90&pageIndex=1&pa>

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85&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 5) 정수정(2015. 2. 25.). 독일 보육·교육기관의 CCTV 설치 관련 논의.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0057&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88&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 6) 최지선(2015. 2. 25.). 프랑스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0058&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89&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EC%84%A4%EC%B9%98에서 2020. 6. 9. 인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61114>에서 2020. 7. 15. 인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pic>에서 2020. 6. 9. 인출.

- 1) 독일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germany.do
- 2) 미국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usa.do
- 3) 영국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england.do
- 4) 일본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japan.do
- 5) 프랑스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eu.do

6) 핀란드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eu.do

Farley, A. (2018). Laws about Video Surveillance in Childcare Facilities, Legal beagle. <https://legalbeagle.com/8527079-laws-video-surveillance-childcare-facilities.html>에서 2020. 7. 8. 인출.

Ofsted (2019). Surveillance and monitoring in residential childcare settings. Gov UK. <https://www.gov.uk/guidance/surveillance-and-monitoring-in-residential-childcare-settings>에서 2020. 7. 8. 인출.



부록

부록 1. 사례조사 양식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양식

부록 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안)

부록 1. 사례조사 양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조사(원장용)

사례조사 일시: _____

기관명								
기관 유형								
기관 규모	정원 () 명 / 현원 () 명							
교직원 구성	총 () 명							
	원장	보육 교사	특수 교사	보조 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조리원	간호사	사무원
경력	원장 경력 만 년 보육 총 경력 만 년							

※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설치시기	
설치이유	
정보주체 동의 여부	① 교사 동의서: ☐ 매년 받음 ☐ 매년 받지 않음 ② 보호자 동의서: ☐ 매년 받음 ☐ 매년 받지 않음 ※ 동의를 받을 경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질문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종류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 촬영시간: • 촬영범위: ② 네트워크 카메라 • 실시간 열람 여부: ☐ 하고 있음 ☐ 하지 않음 • 실시간 열람 시간 제한 여부: ☐ 제한 있음 ☐ 제한 없음 • 열람 가능한 시간대: ()시 ~ ()시
화질 등급	☐ SD급 ☐ HD급(100만 화소) ☐ HD급(130만 화소) ☐ HD급(150만 화소) ☐ Full-HD급(210만/250만 화소) ☐ Ultra-HD급(830만 화소) ☐ 모름
설치 운영책임관 지정	• 책임관:
	• 운영(담당자):

설치구역	• 설치카메라 대수(채널 수): 총 ()대(채널)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조리실	복도/현관	사무실	양호실	건물 외부	기타
안내판 위치/ 기재사항	※ 안내판 기재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자·책임자 연락처										
운영 및 관리											
내부 관리계획	① 작성한 내부 관리계획 확인 ② 홈페이지 게시 여부 확인										
안정성 확보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저장장치 보관장소											
보관장소의 출입제한 여부											
점검시기											
감시 및 관리 시스템	☐ 유인시스템: 영상정보관리 책임자가 감시 및 관리하는 시스템 ☐ 무인시스템: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열람 및 제공											
영상정보 열람 장소											
열람 절차	※ 작성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 확인										
열람 요청 시 참석자											
개인정보보호	※ 영상에 나오는 다른 영유아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는지?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영상정보 저장기간											
삭제 주기 및 방법											
관리대장	※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방식										
보칙											
사무의 위탁	① 위탁 여부: ☐ 원장이 직접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수행 ☐ 전문기관에 위탁 ② 위탁 범위: ③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이수증을 관리하고 있는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부모나 교사에게 언제(예: 오리엔테이션, 입소상담 시), 어떤 방식으로 내용 전달을 하십니까?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관리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관련

3. 영상정보 열람 요청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4. 영상정보 열람 요청 사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5. 열람 요청 사례 중 실제 열람이 이루어진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6. 열람 제외 시, 열람이 요청이 거부되거나 열람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과 관련된 어려움(분쟁)이 있었습니까?
 - 7-1. 열람 시 주로 누가 입회했습니까?
 - 7-2. 관련 사안에서 영상정보를 열람해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7-3. 열람 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열람 후에 부모 및 교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셨나요?)
8.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이드라인 관련

9.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10.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개선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정책 방향에서 중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조사(교사용)

사례조사 일시: _____

기관명	
성별	☐ ① 남 ☐ ② 여
경력	교사 경력 만 ____ 년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경험	☐ ① 있음 (사유: _____)
	☐ ② 없음
담당 반	☐ ① 만0세 ☐ ② 만1세 ☐ ③ 만2세 ☐ ④ 만3세 ☐ ⑤ 만4세 ☐ ⑥ 만5세 ☐ ⑦ 혼합연령(3,4/4,5/3-5)
반 구성 특성	☐ ① 장애 유아 포함 ☐ ② 다문화 유아 포함 ☐ ③ 해당 없음
보조교사 유무	☐ ① 있음(전담) ☐ ② 있음(타 학급/반과 공유) ☐ ③ 없음
담당 반 운영 시간	_____시 _____분 ~ _____시 _____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으셨습니까?
2.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관련

3. 어린이집의 영상정보 열람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4. 영상정보 열람 요청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5. 영상정보 열람 요청 사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6. 열람 요청 사례 중 실제 열람이 이루어진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7. 열람 제외 시, 열람이 요청이 거부되거나 열람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과 관련된 어려움(분쟁)이 있었습니까?
 - 8-1. 열람 시 선생님이 함께 참석하셔서 전후 상황을 설명하셨습니까?
 - 8-2. 관련 사안에서 영상정보를 열람해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8-3. 열람 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열람 후에 부모 및 원장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셨나요?)
9.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이드라인 관련

10.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1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개선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정책 방향에서 중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조사(부모용)

사례조사 일시: _____

이용하는 기관명			
이용 기관 유형	☐ ① 국공립 ☐ ② 사회복지법인 ☐ ③ 법인단체 ☐ ④ 민간 ☐ ⑤ 직장		
기관 이용시간	_____시 _____분 ~ _____시 _____분 * 일반적인 이용시간을 적어주세요.		
기관을 다니기 시작한 시기	_____년 _____월 부터 현재까지 * 현재 기관을 다니기 시작한 시기를 적어주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경험	☐ ① 있음 (사유: _____) ☐ ② 없음		
자녀 성별	☐ ① 남 ☐ ② 여	자녀 생년월	_____년 _____월
응답자 성별	☐ ① 남 ☐ ② 여		
응답자 취업 여부	☐ ① 취업 ☐ ② 미취업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동의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셨습니까?
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언제(예: 오리엔테이션, 입소상담 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으셨습니까?
3.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어떤 형태(CCTV/네트워크 카메라)로 설치되어 있으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4.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홈페이지 게시 여부)
5. 어린이집의 CCTV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관련

6. 어린이집의 영상정보 열람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7. 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 → 7-1번으로, 없을 경우 → 8번으로)

7-1.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7-2. 어떤 종류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하였습니까?

7-3. 실제 열람을 하셨습니까? (열람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질문)

7-4. 열람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열람 시 누가 함께 입회했나요?

7-5. 열람하신 영상에서 다른 영유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7-6. 열람 후 원장 및 교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셨는지?

8.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8-1. 관련 사안에서 영상정보를 열람해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8-2. 열람 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열람 후에 원장 및 교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셨나요?)

9.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이드라인 관련

10.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1.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정책 방향에서 중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양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 조사지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수행을 위해 진행되는 의견조사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통계자료로만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백 선 희

※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소속	
전공	
보육 관련 경험 유무 및 경력	☐ 보육 관련 경험 있음 • 보육 총 경력 만 ____ 년
	• 관련 업무 기재:
	☐ 보육 관련 경험 없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1. 사전 의견 수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학부모 총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개최
 -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등의 실시
- 학부모 총회의 주재자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공정하게 의견이 수렴되도록 진행해야 함
- 학부모 총회, 운영위원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방침이나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장치로써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수준의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질을 가진 카메라를 설치해야 함
 - 화소란 출력용 디스플레이 기기 상 표현되는 색이 있는 점의 집합 중 각각의 점으로 픽셀(Pixel)과 동의어
 - 해상도는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픽셀)의 숫자, 대개 가로방향의 화소(픽셀) 수×세로방향의 픽셀의 수로 나타냄
- 화질 등급은 다음과 같이 SD, HD, Full-HD, Ultra-HD 구분하고, 고해상도 [HD(High Definition)]급은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의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에서 표현하는 HD급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화질 등급에 따른 픽셀수 기

준 예시(가이드라인에 제시)를 따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는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해야 함
- 카메라는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됨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에도 동일한 성능 및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권장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 설치구역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및 식당, 강당(단, 식당, 강당은 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다음 구역은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음
 -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주/부출입문)
 - 어린이집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지역 및 중요실
- 그 외 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함
- 야간 녹화가 필요한 곳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 안내판의 설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함
 - 다만, 안내판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음
-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함
 -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자·책임자·연락처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 어린이집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고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어린이집 출입구
 - 어린이집 주변 경계부(담장)
-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를 즉시 수정하여 설치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의 예외

1. 동의 및 불이익 금지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호자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이유로 입소 거부, 퇴소 종용 등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동의시기

- 서면동의를 신규 반 편성월을 기준으로 받아야 함이 원칙임
 - 다만, 입소 상담과정에서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최초 설치시에는 최초 설치 의사결정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 기준일 다음에 입소한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기 결정된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다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상기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차년도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에 반영해야 함
-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신고 수리시 정한 기간 내에서 유효하며, 차 년도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 동의절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당해 연도 입소 상담과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 신고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폐쇄회로텔레비전의 미설치 또는 미운영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서면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로 신고해야 함
- 관할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부터 폐쇄회로텔레비전의 미설치 또는 미운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설치 또는 운영의 면제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통보토록 함
 -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1. 동의 및 불이익 금지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에 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이유로 입소 거부, 채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동의 시기

-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기준은 신규 반 편성월의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최초 설치 시에는 최초 설치 의사결정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 서면동의를 전체 대상자로부터 신규 반편성월 기간 중에 받지 아니하면 당해 연도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운영할 수 없음
-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동의 여부는 1년간 유효하며, 차 년도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함
-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기준일 이후에 입소 또는 채용된 동의권자의 동의 여부는 기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다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상기 동의권자의 의견을 차년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여부에 반영해야 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 동의절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입소 상담과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직원에게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보육교직원이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 보고 및 운영

- 어린이집 원장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알 수 있도록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신고절차에 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시 열람 등에 대해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준하여 운영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1. 책임자 등의 지정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책임자가 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이라 한다)가 됨
 - 관리책임자 이외에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관리 책임자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열

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로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함
 - ※ 어린이집 원장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외부에서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금지되는 행위임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내부 관리계획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되는 장소
 -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 최소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자동 삭제 가능
- 어린이집의 원장은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설정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 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1항 제4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영상정보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함
 -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
 -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 지능형 감시시스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상 징후 영상 촬영 시 자동 알림기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수립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무인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함
 - 유인시스템: 영상정보관리 책임자가 감시 및 관리하는 시스템
 - 무인시스템: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 설치·운영 점검 등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열람 및 제공

1. 열람의 요청

-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 “보호자”의 개념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는 개념(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으로 열람의 다툼이 있을 경우 이 순서로 열람의 우선권을 부여함
- 열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자료에 한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단, 즉시 열람케 하는 등 보호자 등과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열람의 일시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열람

-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열람 조치시 보호자 등이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보호자 등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함
 -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미성년(14세 미만) 정보주체의 동의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있음
- 영상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의 요청자) 및 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음
 - 원장은 보호자가 동의시 관계공무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음
- 열람의 범위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함

-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 이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하게 할 경우 보육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시행령 제20조의8에 따른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 열람의 거부

- 시행규칙 제9조의4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 영유아의 안전 등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열람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의 요청은 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 보육담당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안전업무 수행 이외의 열람요청은 제한됨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의 열람요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수사 관련 법령에 의한 영장이나 공문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관계 공무원 등이 열람 요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 열람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및 동 지침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열람요청은 공문서 등으로 열람요청을 갈음할 수 있음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열람 요청시에는 공문서, 신분증 등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요청 내용이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열람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및 동 지침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안전관련 기관과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6. 자료의 제공 등 제한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영유아보육법령에는 영상자료 제공에 관한 조항 없음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 자료 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영상자료의 저장

- 영상자료의 저장기간은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
- 녹화된 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 시간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야간 휴일 등에도 녹화할 수 있음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 영상자료의 삭제

-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자료는 어린이집원장이 법 제15조의5 제3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함
 - 다만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저장용량을 초과하여 이전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 * 보존기간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됨(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 영상정보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
- 열람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추가 보존 사유 해소시 즉시 삭제해야 함
- 보육교사 등 정보주체는 자신 또는 보호하는 아동의 영상정보의 존재 유무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요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 열람 등 기록의 관리

- 어린이집 원장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영상정보 열람 요구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열람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 영상정보 열람 요구자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 사유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 칩

1. 사무의 위탁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운영업무 및 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려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해야 함
-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비밀유지의무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영상자료를 열람한 보호자 등은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적절

☐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안)

I. 총칙

1. 목적
2. 용어정의
3. 적용범위
4.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II.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 사전 의견 수렴
2. 정보주체의 동의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4. 설치구역
5. 안내판 설치

III.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의 예외

1.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I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1. 책임자 등 지정
2. 안전성 확보 조치
3. 내부 관리계획
4. 설치·운영 점검 등

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1. 열람 요청
2. 열람
3. 열람 거부
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5.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6. 영상정보 제공 등 제한

VI.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 영상정보 수집 제한
2. 영상정보 저장
3. 영상정보 삭제
4. 열람 등 기록 관리

VII. 보칙

1. 사무 위탁
2. 비밀유지의무

I · 총칙

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조항을 토대로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정의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함
-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함

3 적용범위

- 어린이집 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2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해 영유아보육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권리보호 및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해야 함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함

II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 사전 의견 수렴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학부모 총회(재원아동 부모 90% 이상 참석) 개최
- 운영위원회 개최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보육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신학기 부모 오리엔테이션 등), 설문조사 등 실시
- 학부모 총회의 주재자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공정하게 의견이 수렴되도록 진행해야 함
- 학부모 총회, 운영위원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방침이나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함

2 정보주체의 동의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열람절차 등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안내한 후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의 서면동의(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함
-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서면동의(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항
- 영유아의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명회(신학기 부모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목적 및 내부 관리계획을 충분히 설명한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장치로써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수준의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질을 가진 카메라를 설치해야 함
 - 화소란 출력용 디스플레이 기기 상 표현되는 색이 있는 점의 집합 중 각각의 점으로 픽셀(Pixel)과 동의어
 - 해상도는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픽셀)의 숫자, 대개 가로방향의 화소(픽셀) 수×세로방향의 픽셀의 수로 나타냄
- 화질 등급은 다음과 같이 SD, HD, Full-HD, Ultra-HD 구분하고, 고해상도 [HD(High Definition)]급은 아래 등급 기준 예시를 따름

【 화질 등급에 따른 픽셀수 기준 예시 】

구분	가로픽셀(A)	세로픽셀(B)	값(A*B)	해상도
SD	640	480	307,200	30만화소
	1024	768	786,432	80만화소
HD	1280	720p	921,600	100만화소
	1280	960	1,228,800	130만화소
	1280	1024	1,310,720	130만화소
	1440	1080	1,555,200	150만화소
Full-HD	1920	1080	2,073,600	210만화소
	1920	1280	2,457,600	250만화소
Ultra-HD	3840	2160	8,294,400	830만화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는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는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됨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에도 동일한 성능 및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권장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함

〈참고사항〉

- CCTV의 최장수명이 5년 정도임을 고려하여 기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음
 - 기기를 교체할 경우 교체 시점 기준 고화소 CCTV로 교체해야 함

4 설치구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및 식당, 강당(단, 식당과 강당은 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다음 구역은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음
 -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주/부출입문)
 - 어린이집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지역 및 중요실
- 그 외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함
- 야간 녹화가 필요한 곳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촬영범위가 축소되었는지를 확인함

5 안내판 설치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별지 제17호 서식)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함

-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자·책임자·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 어린이집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고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어린이집 출입구(건물이 두 개 이상일 때는 각 출입구에 설치)
 - 어린이집 주변 경계부(담장)
-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즉시 수정하여 설치함

III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의 예외

1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야 함
- 서면동의를 신규 반 편성월을 기준으로 받아야 함이 원칙임
 - 다만, 입소 상담과정에서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연도 입소상담 과정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함
 - 최초 미설치 시에는 최초 미설치 의사결정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 기준일 다음에 입소한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기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기 결정사항을 반드시 해당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다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상기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반영해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 또는 미운영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서면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로 신고해야 함
-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신고 수리 시 정한 기간 내에서 유효하며, 다음 연도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함
- 관할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또는 미운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설치 또는 운영의 면제를 1년 범위 안에서, 그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보토록 함
 - 필요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호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이유로 입소 거부, 퇴소 종용 등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함
-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기준은 신규 반 편성월의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원칙으로 함
 - 최초 설치 시에는 최초 설치 의사결정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 서면동의를 전체 대상자로부터 신규 반 편성월 기간에 받지 아니하면 당해 연도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운영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입소 상담과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에게 채용 확정 후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보육교직원이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함
-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동의 여부는 1년간 유효하며, 다음 연도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함
- 기준일 이후에 입소 또는 채용된 동의권자(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동의 여부는 기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기 결정사항을 해당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다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상기 동의권자의 의견을 다음 연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여부에 반영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알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신고절차에 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관해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이유로 입소 거부, 채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
- 어린이집 원장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 시 열람 및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준하여 운영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참고사항〉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에는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의 동의서를 매년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운영하던 중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하여 설치하려 할 때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생긴다면 이때는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변경할 수 있음

IV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1 책임자 등 지정

- 어린이집 대표자나 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책임자가 됨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가 됨
 - 관리책임자 이외에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정보 녹화 및 검색, 기타 관리책임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로 영상정보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지켜야 함

2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설정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

- 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제4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영상정보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함
 -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
 -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3 내부 관리계획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처럼 작성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성명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 최소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자동 삭제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설명회(신학기 부모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미리 받은 서면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4 설치·운영 점검 등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월 1회 이상 점검(별지 제18호 서식)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이상 상황과 조치계획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처리담당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도의 문서로 보관해야 함

V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1 열람 요청

-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 “보호자”의 개념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는 개념(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으로 열람의 다툼이 있을 경우 이 순서로 열람의 우선권을 부여함
- 열람 요청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정보에 한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단, 즉시 열람 등 보호자 등과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일의 날씨는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함

- 열람 일시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하되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2 열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 조치 시 보호자 등이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보호자 등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영상정보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영상정보의 요청자) 및 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음
 - 원장은 보호자가 동의 시 관계 공무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음
- 열람 범위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함
-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필요 시 다른 사람은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마스킹)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함
 -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노출된 경우 관리책임자는 열람에 입회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받아야 함
-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이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하게 할 경우 보육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

3 열람 거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서면(별지 제9호 서식)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영유아의 안전 등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열람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의 요청은 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 수행
 - 보육담당 관계 공무원: 안전업무 수행 이외의 열람요청은 제한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의 열람요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수사 관련 법령에 의한 영장이나 공문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관계 공무원 등이 열람을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영유아의 아동학대 또는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 열람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및 동 지침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함

5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4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른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열람 요청은 공문서 등으로 열람 요청을 갈음할 수 있음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열람 요청 시 공문서, 신분증 등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요청 내용이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열람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및 동 지침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안전 관련 기관과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함

6 영상정보 제공 등 제한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조항 없음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VI ·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 영상정보 수집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영상정보처리기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여서도 아니 됨
- *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됨(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2 영상정보 저장

- 영상정보의 저장기간은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
- 녹화된 영상정보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시간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보육이나 휴일보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녹화해야 함
- 열람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관련 내용을 영상정보 추가 보존 관리대장(별지 제 15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3 영상정보 삭제

-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의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함
 - 다만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저장용량을 초과하여 이전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 * 보존기간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됨(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 영상정보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
- 추가 보존한 영상은 추가 보존 사유 해소 시 즉시 삭제해야 함
- 보육교사 등 정보주체는 자신 또는 보호하는 아동의 영상정보 존재 여부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4 열람 등 기록 관리

- 어린이집 원장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4호 서식의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 사유
 - ※ 영상정보 사본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VII · 보칙

1 사무 위탁

- 어린이집 원장(위탁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지만 운영업무 및 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 위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함
-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2 비밀유지의무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

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영상정보를 열람한 보호자 등은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영상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보호자는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별지 제 10호 서식)를 작성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별지 제1호]

※ 본 서식은 예시로서 어린이집에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어린이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 제15의1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원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및 교사의 교권 및 권리의 보호, 교사의 전문성 향상, 보육프로그램 향상,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집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CCTV는 어린이의 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함)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책임자
가. 책임자: ○○어린이집 원장 ○○○(성명 기재)
나. 운영(담당)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성명 기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어린이집 CCTV는 총 ○○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 호와 같다.

1. 보육실 ○○대(○개의 보육실 각1대)
 2. 공용공간 ○대(유희실 ○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대)
 3. 외부공간 ○대(어린이놀이터 1대)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7호 서식과 같은 안내판을 ○○○ 및 ○○○에 설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CCTV운영 장비는 ○○어린이집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Full-HD급(210만 화소)
2. CCTV 촬영: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3. CCTV 정보 보유기간: ○○일
4. CCTV 저장: 210만 화소 이상(1,920x1,080), 초당 10프레임
5. 영상정보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장소: ○○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일 경과시 자동삭제(또는 ○○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 서

식에 따른 영상정보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일
2.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4.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5.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 사유(영상정보 사본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열람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결한다.
-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어린이집 운영담당 직원으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삭제조치 해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 위탁) ①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취득 동의서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따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해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님께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취득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 우리 어린이집은 설치된 CCTV를 통해 정보 주체권자의 어린이집 내 생활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본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내부 관리계획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정보 주체권자(아동의 경우 보호자)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CCTV 설치와 영상촬영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학부모 대상〉

원아 명	보호자 성명	날짜	서명

〈보육교직원 대상〉

성명	날짜	서명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 관리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영상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00일 (기간 경과 후 자동삭제가 원칙이며 법령상 필요하면 보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CCTV 영상 확인 요청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CCTV 영상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영유아의 사고 시 발생상황 파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영상을 확인하는 기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영유아의 안전 확인, 귀하의 알 권리 충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학부모 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원아 명</th> <th style="width: 25%;">보호자 성명</th> <th style="width: 25%;">날짜</th> <th style="width: 25%;">서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30px;"></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원아 명	보호자 성명	날짜	서명				
원아 명	보호자 성명	날짜	서명								
〈보육교직원 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40%;">성명</th> <th style="width: 20%;">날짜</th> <th style="width: 40%;">서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30px;"></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성명	날짜	서명					
성명	날짜	서명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어린이집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어린이집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아 명	보호자 성명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별지 제6호 서식]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소 속	00 어린이집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동의자 현황	- 보호자 수: 00명 - 동의자수: 00명		
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군·구청장				

[별지 제7호 서식]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어린이집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어린이집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대상〉				
원아 명	보호자 성명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보육교직원 대상〉				
성명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별지 제8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 열람 ☐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 월, 일, 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원내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CCTV 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열람절차				
열람 요청 - 열람 요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열람 요청 - 작성해야 할 서류: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 - 확인사항: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상세하게 기재 → 10일 이내 열람 결정 통지 - 열람 요청에 대한 제반 사항 고려 후 결정사항 서면 통보 -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을 서류: CCTV 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확인사항: 열람이 거부될 수도 있음 → 7일 이내 열람 - 결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요청 내용의 영상열람 - 열람을 위한 준비물: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열람동의서 - 확인사항: 열람자는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서 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음				

[별지 제9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 (시 ~ 시)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또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 어린이집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제3자에게 본인 자녀 이외의 다른 아동이 나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원아 명	보호자 성명	날짜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 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 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정 정·삭 제 청 구 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어린이집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번 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정(삭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 부 사 유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CCTV 영상정보 관리대상(이용·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시	요구자	파일명/형태	이용목적/사유	이용시간	이용장소	담당자 확인서명	비고
1	☐ 이용 ☐ 제공								
2	☐ 이용 ☐ 제공								
3	☐ 이용 ☐ 제공								
4	☐ 이용 ☐ 제공								
5	☐ 이용 ☐ 제공								

작성요령

- 구분: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이용)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관련 사항 열람대장에도 기재)
- 일시: 이용·제공 일시 기재('20. 7. 7. 14:00 등)
- 파일명/형태: 관리하는 파일 명칭과 파일 형태를 기재('20. 7. 6. 3~10번 CCTV/동영상, 200706-0003-0010.mp4 등)
- 담당자: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어린이집 원장 000)
- 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범죄수사, 아동학대, 안전사고 확인 등)
- 이용제공받는 요구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 이용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제공 형태 : 영상정보 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라면 영상정보 열람으로 한정

[별지 제14호 서식]

영상정보 열람대장

번호	열람 요청일	열람 요청자 성명	열람 요청자 연락처	열람영상정보 파일명 및 내용	열람 목적	시본 제공시, 제공 사유	열람 여부	결과
1								
2								
3								
4								
5								
6								
7								
8								
9								
10								

영상정보 추가 보존 관리대장

번호	저장일시	파일명	파일 내용	추가 보존 사유	저장형태	삭제일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16호 서식]

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기일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어린이 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치장소 (촬영범위)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담당자	책 임 자: ○○어린이집 원장 ○○○ (연락처) 운 영 자: ○○어린이집 원감 ○○○ (연락처) 위탁업체: 업체명 (연락처)

210mm

297mm

210mm × 297mm(보존용지(2종) 70g/㎡)

부 록

[별지 제18호 서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영상정보 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녹화기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녹화기(DVR/NVR)는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추고 있는가?		
	•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 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 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영유아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안내판 기재사항을 준수하는가?		
	•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는가?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어댑터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설비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보안 관련	•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기타의견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90 485531

93330

ISBN 979-11-90485-53-1